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2024년 하계 전국대의원대회 · 워크숍**

---



- 일시 : 2024. 7. 11.(목) ~ 7. 12.(금)
- 장소 : 국교조 사무실, 충북 충주시 사직산12길 20

# 목 차

I. 개요 .....	1
II. 국교조 활동 보고[창립부터 2024.06.30. 현재까지].....	3
III. 2024년도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5
IV. 회계 .....	13
V. 2024년 단체협상 요구안 및 전략 .....	15
VI. 각 지회 현황 및 활동 보고 .....	31
VII. 근로시간 면제 제도 .....	40
VIII. 수당 신설을 위한 전략 수립 .....	49
IX. 국립대 무상교육 .....	55
X. 24년 국교조-교육부 정책협의회 .....	69
[첨부 자료]	
1.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규약 .....	78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규정 .....	87
3.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89
4.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회계 규정 .....	95
5. 임원 연락처 .....	107

**\*목적**

가. 2024년 하반기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사업 계획  
및 실행 방안 모색

나. 단체교섭(교육부 및 교수노조)을 위한 학습 및 대응 방안 모색

다. 국교조 활동의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한 논의:

1. 국교조 지회 현황 및 활성화 계획 수립
2.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논의
3. 교직수당, 연구수당 수령을 위한 전략 논의
4. 국립대 무상교육
5. 국교조-교육부 정책협의회

- 일시: 2024년 7월 11일(14:00)부터 24일(17:30)까지

- 장소: 국교조 노조사무실(충북 충주시 사직산 12길 20, 문화동 2422번지)

- 참여 대상: 국교조 집행부(회장단 및 각 위원장), 지회장, 단체교섭위원, 조합원 등

**\*행사 일정**

<p>02.23.(화요일) 13:30-1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li> <li>■ <b>개회식</b> : 사 회: 김영표 (사무총장, 한국교통대학교)</li> <li>~ 참석자 소개</li> <li>~ <b>개회사</b> : 남중웅 (위원장)</li> </ul>
<p>14:00-14: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반기 결산 및 감사보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영표 (사무총장, 한국교통대학교),</li> <li>- 배재국 (감사, 한국해양대학교), 임경빈 (감사, 한밭대학교)_</li> </ul> </li> <li>■ <b>상반기 활동보고</b></li> <li>■ <b>규약·규정 제정 및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중웅(위원장)</li> </ul> </li> <li>■ <b>후반기 국교조 사업 계획 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중웅(위원장)</li> </ul> </li> </ul>
<p>15:00 - 17: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교조 활동의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한 논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인철 (수석부위원장, 경북대학교)</li> <li>1. 단체교섭을 위한 학습 및 대응 방안 모색</li> <li>2. 국교조 지회 현황 보고 및 활성화 계획 수립</li> <li>3.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논의</li> <li>4. 교직수당, 연구수당 수령을 위한 전략 논의</li> <li>5. 국립대 무상교육</li> <li>6. 교육부 정책협의회</li> </ul> </li> </ul>
<p>18:00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만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미정</li> </ul> </li> </ul>

- 2024년 01월 12일: 「전국교수연대회의」 2024-01차 회의, 온라인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참석.
- 2024년 01월 23일: 『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무학과 제도 강제 정책 규탄” 국회소통관, 위원장, 사무총장 참석
- 2024년 01월 30일: 『한국체육대학교 단체교섭 요구』,
- 2024년 01월 31일 - 2월 1일: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한교협)-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 및 전국교수연대회의 참석. 여의도 일원,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 2024년 02월 15일-16일: 「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중앙위원회 소집, 중앙집행위원회」  
 제목: 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중앙위원회 소집,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관련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 16일(금)  
 -장소: 부산대학교 및 해운대 일원  
 -대상: 대의원, 지회장, 임원, 조합원 등  
 -요청사항: 의견 접수  
 (1) 각 지회 대의원 명부 제출 요망(2024년 2월 현재)  
 (2) 일정에 대한 의견  
 (3) 각 지회 참석자 현황 파악(숙소 예약 등)  
 (4) 각 회의 안건  
 (5) 기타사항
- 2024년 02월 19일: 한밭대지회 조합원 연수회 참석, 위원장, 사무총장
- 2024년 02월 22일: 『교수연대회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무학과 제도 강제 정책 규탄” 용산 대통령실 앞.
- 2024년 2월 29일: 『교수연대회의 온라인 회의』 ZOOM 회의
- 2024년 3월 4일: 2024년 제1차 『국교조 임원 회의』 오후 5시 ZOOM 회의
- 2024년 3월 8일: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한교협)-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 위원장
- 2024년 3월 22일: 국교련 출범식 축하, 온라인, 위원장
- 2024년 4월 1일: 2024년 제2차 『국교조 임원 회의』 오후 5시 ZOOM 회의
- 2024년 4월 12일: 『국교조-국립한국해양대학교 단체교섭 상견례』 오후 4시, 해양대, 위원장, 지회장, 교섭위원-총장, 교무처장, 교섭위원
- 2024년 4월 15일: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한교협)-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 위원장
- 2024년 4월 19일: 『교수연대회의 워크숍』 대전 지식산업센터, 위원장, 부위원장 등.

- 2024년 5월 9일: 『**교육부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회의**』 4시, 국교조 사무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조합원 등-교수노조 교섭위원 등
- 2024년 5월 10일: **국립 5·18 묘지 참배 『교수연대회의』** 광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전남대 지회장, 사무국장 등
- 2024년 5월 13일: 2024년 제3차 『**국교조 임원 회의**』 오후 5시 ZOOM 회의
- 2024년 5월 17일: 『**국교조 · 교수노조 - 교육부 단체교섭 요구**』  
[국교조2023-75(2023.04.05.), 교육부 공고 제2023-195호(2023.05.04.) 관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과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정희)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위원이 선임되어 교육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
- 2024년 5월 25일: 『**교수연대회의 워크숍**』 여의도 국교조 사무실, 위원장, 사무총장.
- 2024년 5월 27일: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한교협)-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 위원장
- 2024년 5월 31일: 『**국교조-충북대 단체교섭 요구**』
- 2024년 6월 1일: 사무국장 채용
- 2024년 6월 3일: 2024년 제4차 『**국교조 임원 회의**』 오후 5시 ZOOM 회의
- 2024년 6월 8일: 『**교수연대회의 온라인 회의**』 ZOOM 회의
- 2024년 6월 14일: 『**교수연대회의 회의**』 서울시 용산구 미성식당,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 2024년 6월 17일: 『**국교조-국립한국교통대학교 단체교섭 상견례**』 오후 2시, 교통대, 위원장, 지회장, 교섭위원-총장, 교무처장, 교섭위원
- 2024년 6월 1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 2024년 6월 19일: 『**교수연대회의 온라인 회의**』 ZOOM 회의
- 2024년 6월 20일: 『**국교조 사무실 이전**』 여의도에서 충주로
- 2024년 6월 21일: 『**국교조 사무실 이전 공고**』 교육부
- 2024년 6월 24일: 한국교원노동조합협의회(한교협)-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 위원장
- 2024년 6월 26일: 『**2024년 제1차 국교조 - 교육부 정책 협의회**』 교육부 회의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조직위원장, 기획위원장, 사무총장 - 국장, 과장 등 참석
- 2024년 7월 3일: 『**교수연대회의 온라인 회의**』 ZOOM 회의, 남중웅 위원장 상임대표 선임
- 2024년 7월 11일-12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충주 사무실 및 일원

III

2024년도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 회의

1. 국교조 제 3대 임원 현황

위원장	남중웅	한국교통대학교
수석부위원장	최인철	경북대학교
부위원장	강종수	강원대학교
부위원장	김종우	제주대학교
부위원장	김석만	부산대학교
부위원장	서정호	공주대학교
부위원장	이광희	금오공과대학교
부위원장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부위원장	이준우	한밭대학교
부위원장	장시광	경상국립대학교
부위원장	최석용	전남대학교
사무총장	김영표	한국교통대학교
정책위원장	공 석	
홍보위원장	최인철	경북대학교
조직위원장	강종수	강원대학교
교권위원장	공 석	
기획위원장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발전위원장	임경빈	한밭대학교
자문위원장	오홍식	제주대학교
감사	배재국	한국해양대학교
감사	임경빈	한밭대학교

제26조(임원의 종류와 선거)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0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각분과위원장, 사무총장)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교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처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국교조 제 3대 대의원 현황: 22명

소 속	대의원			
의장	남중웅			
경상국립대학교	장시광	손대영	김종현	조우영
한밭대학교	이준우	남윤의	진경일	백 강
경북대학교	최인철	박충환		
한국해양대학교	이상일	현재열		
금오공과대학교	이광희			
공주대	서정호			
부산대	김석만			
전남대	최석용			
충북대	배득렬			
한국교통대	유정호			
강원대	강종수			
한국체육대학교	윤창선			
제주대학교	김종우			

### 제13조(지위와 구성)

-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의장이 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③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⑤ 선거 절차와 방법,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대의원 선출 단위 및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기능)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소집과 회의)**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국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 3. 2024년 하반기 정책 방향(제안)

#### (1) 교육부 단체교섭

##### ① 구성: 단체교섭 위원

##### \*1차(2022년 합의) 교섭 위원

2020년 단체교섭 위원(당시 직책)	2022년 단체교섭 위원
남중웅(위원장)	남중웅(위원장)
오홍식(국교련 상임회장)	권오현(정책위원장/실무교섭위원장)
권오현(정책위원장/실무교섭위원장)	박상희(기획위원장)
강종수(조직위원장)	강종수(조직위원장)
이형철(교권위원장)	이형철(교권위원장)
최인철(홍보위원장)	최인철(홍보위원장)
문병호(국교련 정책위원장)	이준우(부위원장)
유정호(사무총장/간사)	유정호(사무총장/간사)
조우영(경상국립대 지회 총무부장)	조우영(경상국립대 지회 총무부장)

##### \*2차 교섭 위원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국교조)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교수노조)
남중웅(한국교통대/위원장), 최인철(경북대/실무교섭위원장), 이준우(한밭대), 이상일(한국해양대), 강종수(강원대), 김영표(한국교통대/간사)	김영인(서울신학대), 노중기(한신대), 서진형(경인여대), 정현용(대전대)

##### \*2차 교섭 위원(예비)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국교조)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교수노조)
조우영(경상대), 임이삭(한국체대)	남정희(대전대), 김철홍(인천대)

##### ② 활동 내용:

- 단체교섭 준비 워크숍 개최
- 회의 운영: 월 1회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 개최
- 전국교수노조와의 협의회 개최(필요시)

##### ◎ 전략 논의: p. 15 참조

(2) 국교조 5주년 기념식 준비

\*공동 준비 위원: 김영표 사무총장/강종수 조직위원장/

\*프로그램 준비: 최인철 수석부위원장/ 이준우 부위원장

\*장소: 선정 필요

\*일시: 10월 25일(금) 혹은 다른 날

\*참여 대상: 전체 조합원

\*초청 대상:

\*주요 행사: 2023년 단체교섭 출범식 등

-영상 상영: 2주년 기념행사 때 만든 영상에 그 이후 사진 등을 추가하여 작성, 기타

(3) 2024년 하반기 국교조-교육부 정책협의회

[참고] 2024년 전반기 정책협의회 의제 중 계속 협의 필요 항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단체협약 이행 상황: 점검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여 안건 제시</li><li>2. 사무실 지원비 문제</li><li>3. 타임오프제 관련 현황: 교수의 근로시간 책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논의 필요</li><li>4. 교연비 문제(가이드라인 철회)</li><li>5. 사무국장 제도 폐지 이후 개선 문제 등</li><li>6. 대통령 소속 고등교육위원회 설치(대학 자율화 보장 등)</li><li>7.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li><li>8. 대학평가 방안</li><li>9. 학과장 법정 수당 지급 문제</li><li>10. 무전공 입학 등 문제</li><li>11. 국립대학법/국립대학법 시행령/국립대무상교육 법 등</li><li>12. 기타</li></ol> |
|---|

\*상반기 정책협의회 논의 내용에 대한 교육부 반응 및 시정 사항 점검

\*추가 의제 발굴

(4) 「국립대학법」 재정 국교조 방안

\*21대 국회 민형배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법률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

\*22대 국회 대응 방안: 내용을 보충하여(국립대 지배구조, 총장 독임제, 학장 직선제, 대학평의원회, 대학재정위원회 등) 재 발의, 국회와 토론회 개최, 전국교수연대회의와 연대 필요, 법안의 처리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 강구

(5) 「국립대학 무상교육 법」 재정 국교조 방안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사항

\*22대 국회 국립대학법과 동반 대응 필요

◎ 세부 사항: p. 55 참조

(6) 사무국장 제도 폐지 이후 후속 방안

\*민주적 임용 방식 마련: 총장이 자의적으로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방안 마련 필요. 예) 교수회의 임명 동의 등

\*사무국장 업무 분장 관련 법령 개정: 사무국장의 업무 분장 내용을 대학의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요구, 교육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7) 전국교수연대회의의 참여 및 국교조 위상 강화 방안

\*7개 참여단체 공동대표제에서 : 국교조 위원장 상임대표 선임, 국립대 관련 의제 부각

(8) 지회 활성화 및 조합원 확보

◎ 전략 논의: p. 31 참조

(9) 국립대 교수 메일링 리스트 재정비

- 각 지회는 전체 교원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본조로 8월 말까지 보고
- 지회가 설립되지 않은 대학의 교원 리스트는 홍보위원장이 update.
- 형식: 엑셀 파일

이름	단과대학	학과	이메일	전화번호(옵션)

(10) R&D 예산 삭감 피해 사례 조사 및 대응

<24년 7월 5일 발송 이메일>

2024년도 R&D 예산이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벌써 2024년의 반이 지나갔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 현장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R&D 사업과 과제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은 교수단체와 연구자단체, 대학원생 노조 등과 힘을 합쳐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R&D 예산의 원상회복은 물론이고 대폭 확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11) 기타 사항: 국감 대응 방안 등

- \*특히 교연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소송에서 승소한 경북대학교의 의견 등을 대학이나 교육부 감사에서 질의할 내용 등을 정리하고, 수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하는 형태로 자료 준비 필요.
- \*국교조가 국정감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매뉴얼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음(예: 국정감사 관련 정보 수집,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자료 정리, 질문 작성, 질의를 담당할 국회의원 선정 및 협조 요청 방안 등)

## IV

## 2024년도 상반기 회계 보고(대의원 의결 사항)

직전 2023년 12월 31일의 잔액은 69,431,988원임.  
 수입은 2024년 01월 01일 이후 57,523,830원이고,  
 지출은 2024년 01월 01일 이후 49,984,590원이며  
 잔액은 2024년 06월 30일 76,971,228원임.

자산(원)

구분		주요항목내용
자산	현금 및 예금	76,971,228 원
	토지 및 건물	0 원
	기타 자산	0 원
부채		0 원

수입내역(원)

조합비	37,490,000 원
예금이자 등	33,830 원
사무실 보증금 회수	20,000,000 원
<b>수입총액</b>	<b>57,523,830 원</b>

지출내역(원)

일반관리비용	인건비	7,800,000 원
	업무추진비	2,740,100 원
	기타운영비	26,325,380 원
사업수행비용	총회 등 대회비	5,481,000 원
	조직사업비	1,848,100 원
	정책사업비	2,572,340 원
	교섭·쟁의사업비	3,212,700 원
기타(세금)		4,970 원
<b>지출총액</b>		<b>49,984,590 원</b>

◎ 회계 세부 사항

※ 별첨 문서 참조

◎ 2023년도 감사 보고

※ 별첨 문서 참조

## 1. 단체교섭 진행 상황

[2023년]

- 4월 5일: 국교조,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 4월 19일: 교육부,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 4월 2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참여 신청
- 4월 28일-29일: 『국교조 단체교섭 관련 워크숍』 경상국립대
- 5월 4일: 교육부,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안내 공문 발송
- 5월 26일: 국교조-전국교수노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1차 협의회 개최 (여의도 국교조사무실, 남중웅 위원장, 박노진 감사, 권오현 정책위원장, 이형철 교권위원장, 최인철 홍보위원장 참석)
- 6월 7일: 국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검토 회의 개최
- 6월 30일: 국교조-전국교수노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2차 협의회 개최 (여의도 국교조사무실, 남중웅 위원장, 권오현, 최인철, 강종수, 이상일, 김석만, 이준우 교수 참석)
- 9월 22일: 국교조-전국교수노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3차 협의회 개최
- 진행상황: 교육부는 단체교섭관련 노동부 협의 결과 교수노조(사립+비정규교수+국공립교수 포함 된 단체)와 분리교섭은 불가하며 다만 교섭내용에서 국립대만의 내용을 다루어야 함을 통보하였음.
- 교수노조는 교섭위원 비율을 5:5로 하여야 함을 최종 통보하였지만 국교조는 7:3으로 진행해야 함을 고수.

[2024]

- 진행상황: 전국교수노조가 국교조에 교섭위원 비율을 국교조 6, 전국교수노조 4를 제안했고 국교조 수용.
- 5월 09일: 국교조-전국교수노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최종 회의 개최: 단일 교섭요구안 합의, 최종안 마련
- 5월 17일: 단체교섭 요구공문 발송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  
Union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수신자 교육부장관  
(경유) 인재정책기획관  
제 목 단체교섭 요구건

1. 교육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교조2023-75(2023.04.05.), 교육부 공고 제2023-195호(2023.05.04.) 관련입니다.
3.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중웅)과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남정희)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위원이 선임되어 아래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 아 래 -

- ①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 ② 대표자의 성명 : 남중웅(101-4533-0189), 남정희(010-4295-3035)
-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아레나K 20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극동VIP빌딩 1101호(02-784-6667)
- ④ 교섭요구사항 : 노동조합(지회 포함)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단체협상 사항 일체

붙임: 1. 단체협약요구안 1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총장	김영표	수석부위원장	최인철	위원장	남중웅
시행	국교조2024-48(2024.05.16.)		보존기간(3년)	010-4533-0189(위원장)	
	우(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아레나K 204호 / TEL: 043-849-1512 / FAX: 043-841-5836				
	우(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VIP빌딩 1101호 / TEL:02-784-6667 / FAX:02-784-6668				
	E-mail : uknup2019@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uknup.org				

○ 7월 02일: 최종 본교섭 위원 명단 통보

## 2. 단체교섭 교섭 위원

### \*2차 교섭 위원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국교조)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교수노조)
남중웅(한국교통대/위원장), 최인철(경북대/실무교섭위원장), 이준우(한밭대), 이상일(한국해양대), 강종수(강원대), 김영표(한국교통대/간사)	김영인(서울신학대), 노중기(한신대), 서진형(경인여대), 정현용(대전대)

### \*2차 교섭 위원(예비)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국교조)	2024년 단체교섭 위원(교수노조)
조우영(경상대), 임이삭(한국체대)	남정희(대전대), 김철홍(인천대)

### 3. 단체협약 요구안

##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과 교육부와의 공동 단체협약서

### 전 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교육부와 『대한민국 헌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육부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상호 역할과 관계를 인정하고, 고등교육 주체의 한 축으로서 노동조합이 고등교육의 발전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 입안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 보장과 교육·연구·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정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 제 1 장 총칙

##### 제1조 (당사자)

①이 협약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의 공동교섭단과 교육부 장관(이하 '교육부')을 당사자로 한다.

②이 협약은 교육부와 교수노조 및 국교조(이하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모든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③교육부 장관은 이 협약 중 개별 대학이 이행해야 할 내용에 관하여는 이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조 (협약의 효력 및 우선 적용)

①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은 강행법령이 아닌 한 교육관계법,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며,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②이 협약과 노동조합 산하 조직이 개별 대학과 체결한 협약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교육부는 다른 단체와의 협약으로 인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 **제3조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건 저하 금지)**

협약은 기존의 관행으로 인정되었거나 이미 확보된 노동조합 활동 및 교육·연구 등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이후에도 개별 대학에서 노동조합 및 교원에 더 유리한 조건 및 지위 부여를 방해하지 않는다.

### **제4조 (문서 열람 및 자료제공)**

①교육부는 각 대학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공문을 교수노조 및 국교조에 제공한다.

②교육부는 기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③기밀을 요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해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부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등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쌍방은 서로 보안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 **제5조 (단체교섭의 원칙과 절차)**

①교육부와 노동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교섭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교섭위원회는 각각 10인 이내로 하고, 교섭대표는 각각 노동조합과 교육부의 대표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단체교섭에 교섭위원 이외에도 노정 양측이 필요한 사람의 참관을 허용한다.

④단체교섭 시 노정 양측은 각각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회의기록과 단체교섭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한다.

⑤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교섭절차합의서에 명기한다.

## **제 2 장 노동조합 활동**

### 제6조 (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교육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며,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교육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노동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홍보 선전물 배포 및 부착 등의 자유로운 홍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교육부는 노동조합 사무실, 각종 집기,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유지 관리를 위한 일정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별도 부속합의를 마련한다.

④교육부는 노동조합이 회의·강연 등을 위해 교육행정·연수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⑤노동조합은 제4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요청해야 하며, 시급한 경우 구두로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교육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⑥교육부는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경고하거나 징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7조 (노동조합 전임활동 및 근무시간면제)

교육부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라 교수노조 및 국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본조 전임자 및 각 대학의 노조 전임자의 전임활동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면제제도 등을 통하여 전임활동에 따른 임금 및 기타 처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제8조(단체행동 보장)

①교육부는 노동조합의 집회·농성 등의 단체행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②교육부는 조합원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제9조 (노동조합활동 중 공무상 재해)

교육부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및 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사고에 대해 공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 제10조 (정례 정책협의회)

- ①교육부와 노동조합은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정책 결정, 근무조건 등의 논의와 의견 교환을 위한 정례 정책협의회를 연 4회(분기별) 실시한다.
- ②회의 일시와 안건은 교육부와 교수노조 및 국교조 간 협의로 정한다.
- ③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차기 단체협약안에 반영하여 법령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④긴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 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시 정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3 장 대학의 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

### 제11조 (대학 공공성 강화)

- ①교육부는 대학이 단순한 기능적 지식인의 양성이 아니라 국가와 학문 발전을 위한 전인적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재임을 천명한다.
- ②①항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교육의 무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 ③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강제적·일방적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및 학벌 서열화 정책을 지양한다.
- ④대학평가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러지 못할 경우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대학평가를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그 내용은 정책협의회에서 다룬다.
- ⑤전국 또는 지역 대학 연합·통합네트워크와 공동 학위제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한다.
- ⑥열악하고 부실한 사립대학,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역 자치단체가 함께 출연하는 지역형 공립대학 또는 공영형 사립대의 모델을 도출한다.
- ⑦국공립대학 및 국가재정이 지원된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 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부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상설감사단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⑧교육부와 노동조합은 국공립대학 발전과 이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립대학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⑨교육부는 지방대학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지방대발전특별협의회'에 노

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⑩노동조합과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준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고등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⑪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에 교수노조 및 국교조 추천 위원을 포함한다.

⑫교육부는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이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다.

⑬교육부는 대학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방식을 개선한다.

### **제12조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원 확보)**

①교육부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의 확대를 위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향한다.

②교육부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 자원 비율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충한다.

③노동조합과 교육부는 대학 발전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④교육부는 기존 고등교육예산 이외의 추가 5조원의 재원을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해 확보한다.

## **제 4 장 교육 및 연구**

### **제13조 (교육 연구의 자율성과 민주성)**

①교육부는 대학 교육과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재정 지원을 이유로 대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②교육부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지키며 대학 구성원의 정책 참여를 보장한다.

### **제14조 (교육여건 개선)**

①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을 확충한다.

②교육부는 사립대학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재단전입금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적인 개선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③교육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감축한다.

④전임 교원의 법정 최대 의무강의 시수를 학기당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하여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한 강의실 및 실험실 등 개선에 노력한다.

⑥교육부는 교원의 강의 평가 제도를 강의 개선 등과 같은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15조 (연구여건 개선)

①교육부는 대학의 연구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한다.

②교육부는 인문사회과학, 기초학문 및 예술 분야 등 기초 학문을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③교육부는 국공립 대학의 대학원 무상교육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한다.

④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한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한 전임교원에 대한 유급 연구년을 법으로 보장한다.

⑤교육부는 대학의 연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험실습 장비 구입비, 전자자료(학술 DB) 구입비, 자료 구입비 및 실험실습비 등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 5 장 임금 및 복지

### 제16조 (임금 및 수당)

①교육부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품위 유지와 기본적 생활을 위한 임금 지급 및 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임금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부는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2항에 따라 보수를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③비정년계열 교원의 경우 각종 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차별 없이 지급한다.

④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에게 연구수당 및 교직수당을 지급한다.

⑤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도록 교원 급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교조와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⑥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해당 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와 형평성을 고려해 교원의 기본급을 13.7% 인상한다.

⑦교육부는 사업비 명목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급여로 전환하고 공무원 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⑧교육부는 교연비 지급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신분병동자(신규, 퇴직, 휴직, 징계 등) 중 공무원과전, 병가, 연가의 사용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⑨교육부는 교연비 지급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연구년 기간에 학생지도를 수행하였다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⑩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 전제로 하는 교연비의 운영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년도 예산을 5% 삭감하는 현행 가이드라인을 폐지한다.

⑪교육부는 성과급적연봉제 제도를 폐지하고 성과 연봉에 해당하는 예산을 기본 연봉에 반영한다.

⑫성과급적연봉제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비정년교수에 대한 누적제와 성과연봉 C등급자에 대한 교육연구급 가산 제한(감액 적용)을 실시하지 않는다.

⑬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교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⑭교육부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강사 지원금액을 증액한다.

### 제17조 (고용안정)

①교육부는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학과 폐지, 전공 통·폐합으로 인한 불합리한 인사 조치가 없도록 각 대학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

②재임용시 신규임용 기준의 적용과 계약조건의 하향조정을 금지하며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한 재임용 거부를 금지한다.

### 제18조(복지후생)

- ①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의 후생복지시설을 개선한다.
- ②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맞춤형복지제도의 복지 포인트 액수를 몰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인상한다.

**제19조(정년 연장)**

교육부는 교원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한다.

**제20조(훈포장 상신)**

교육부는 대학 교원의 임용연령을 고려하여 퇴직자에게 수여하는 훈포장 상신에 소요되는 재직기간을 초중등교원에 비해 5년 단축하여 적용한다.

**제21조(안전·보건 및 재해 방지)**

- ①교육부는 대학이 안전과 보건, 재해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②교육부는 연구실 및 실험실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대학이 책임지고 충분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③교육부는 교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6 장 대학 민주화**

**제 22조 (대학 운영의 민주화)**

- ①대학평의원회 자문 사항을 심의 사항으로 변경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 참여를 보장한다.
- ③총장 선임과정에서 총장 직선제를 포함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를 실행한다.
- ④ 교육부는 민주적인 방식의 학장 선출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를 개정한다.

**제 23조 (사립대학 운영의 민주화)**

- ①사립대학은 개방이사 추천권을 대학평의원회에 부여한다.

②사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에는 처장급 이상의 보직교수는 참여하지 않으며 대학평의원 중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평의원 정수의 1/3을 넘지 못하며, 다른 평의원 과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사립대학은 학생회·교수회·직원회를 법제화한다.

④사립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위원의 학생자치기구 대표 참여를 보장한다.

⑤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교수노조가 3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 **제 24조 (사립대학 이사회 의 공공성 강화)**

①학교법인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춘다.

②학교법인 이사의 친인척 총장 임명을 금지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한다.

④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퇴직 교육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⑤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과 파면 징계를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교수노조가 이사 정수의 1/5에 해당하는 추천권을 갖도록 한다.

#### **제 25조 (사립대학 이사회 의 투명성 제고)**

①학교법인 임원 및 대학총장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 한다.

②사학법인을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킨다.

#### **제 26조 (사립대학 임원취임 취소 사유)**

①교육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1. 임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2. 학교의 장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징계하지 않을 때

3.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행위를 방조한 때

#### **제 27조 (사립대학 감사 기능 강화)**

①대학평의원회가 학교법인 감사 중 최소 1인의 추천권을 갖는다.

②교육부는 전임 교원 20% 이상이 청구 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 **제 28조 (대학운영의 투명성 강화)**

①예결산 공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산출근거를 공개한다.

②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③대학알리미 공시기한을 5년으로 한다.

④대학알리미에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공시한다.

## 제 7 장 비정년계열 교원의 차별 해소

### 제29조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른 처우)

①교육부는 헌법 제31조와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②비정년계열 교원 등 법률에 정하지 않은 교원 제도는 철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교원의 지위에 맞는 처우에 대한 최소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④교원 지위 및 처우 개선의 노력과 함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교원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대학의 교원 처우 실태 등을 조사한다.

⑥교원지위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에 고등교원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⑦초중고 교원 중심의 현행의 교원지위법(약칭)을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한다.

### 제30조 (비정년계열 제도 폐지 및 차별 해소)

①교육부는 비정년계열 교원제도를 폐지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교육부는 각 대학의 전임교원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30%만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하되, 해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인정 비율을 10%씩 감축한다.

③②항 이행을 위하여 교육부는 각 대학 마다 정년전환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재정 지원 정책 등을 활용하여 정년트랙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비정년계열 교원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실질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제시하고, 해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명시한다.

⑤비정년계열 교원의 급여 가이드라인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없이 제시한다.

⑥비정년계열 교원의 교육·연구·근로 환경을 정년트랙 교원과 비교하여 차별이 없도록 한다.

⑦비정년계열 교원의 부교수 및 교수 승진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

## 제 18 장 부 칙

### 제1조(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 제2조(협약 갱신)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새로운 교섭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보충협약)

①이 협약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합원의 복지 및 근무조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해 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협약은 이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보충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후 30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하도록 한다.

### 제4조(협약의 보관 및 신고)

①이 협약은 서면으로 3부를 작성하여 교육부와 교수노조 및 국교조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②제1항에 의해 체결된 협약서는 교육부와 교수노조 및 국교조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을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5조(협약의 이행 등)**

①이 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한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의 제·개정, 법원 판결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는 이 협약의 이행계획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수노조 및 국교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교육부는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교수노조 및 국교조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교육부는 이 협약의 이행결과를 새로운 단체교섭 개시 전까지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및 노동관계 법규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⑥협약안의 조항 및 문구의 해석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교육부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느 한 당사자의 이의 제기 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문구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2024년 00월 0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 4. 단체협상 전략 논의

가. 협상에서 교수노조와의 전략: 최인철

- 요구안의 문제
- 협상 주도권의 문제
- 협상 고착 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전략

나. 2장 노조활동 : 이상일

다. 3장 대학공공성 및 자율성 강화: 이상일

라. 4장 교육 및 연구: 이준우

마. 5장 임금 및 복지: 강종수

바. 6장 대학 민주화: 이준우

1. 활동보고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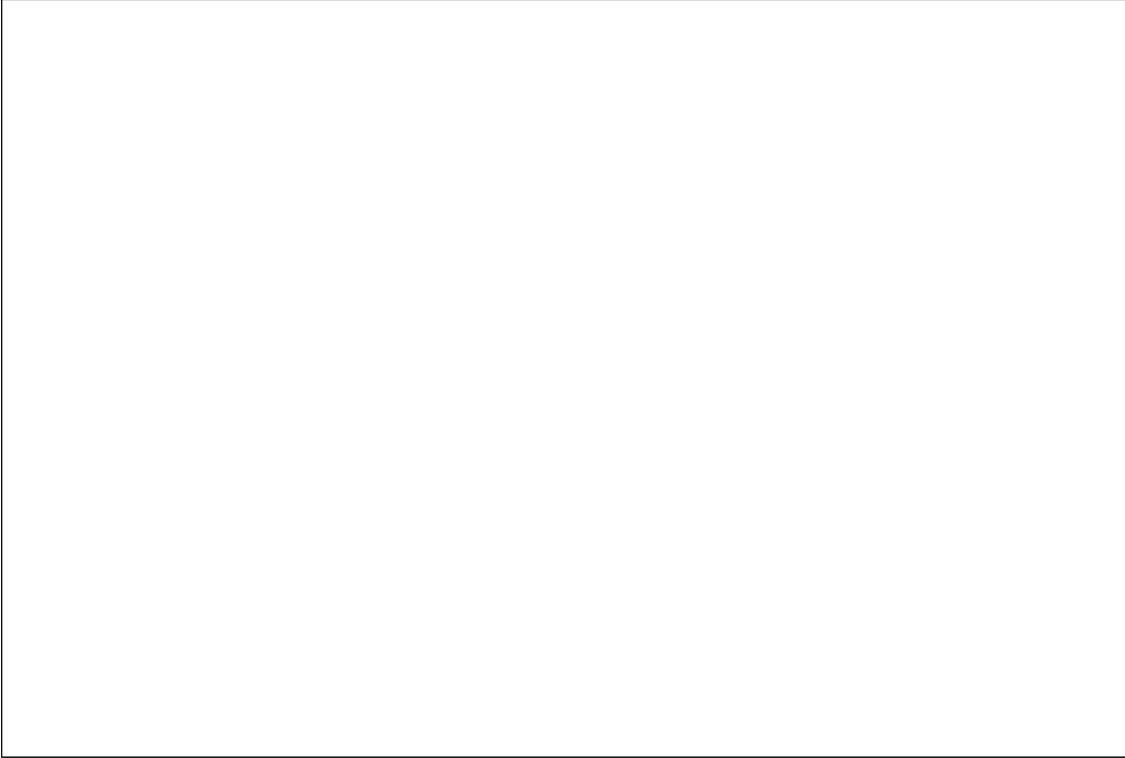
▶경상국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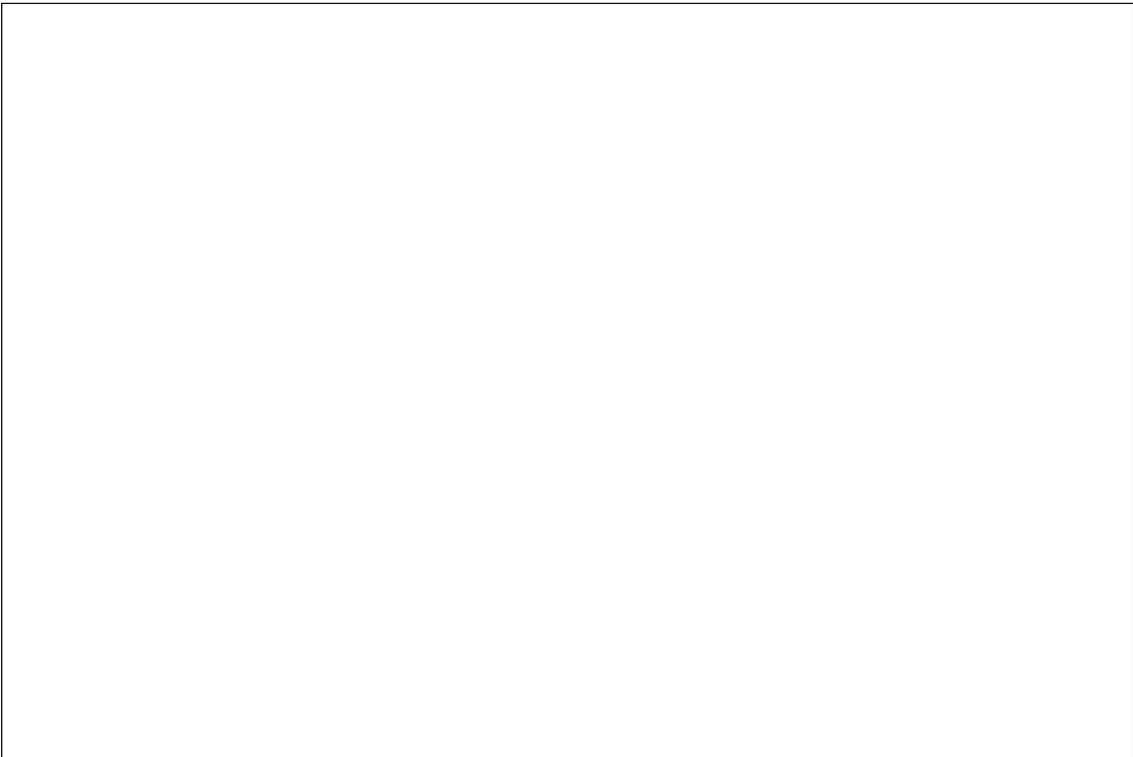
▶공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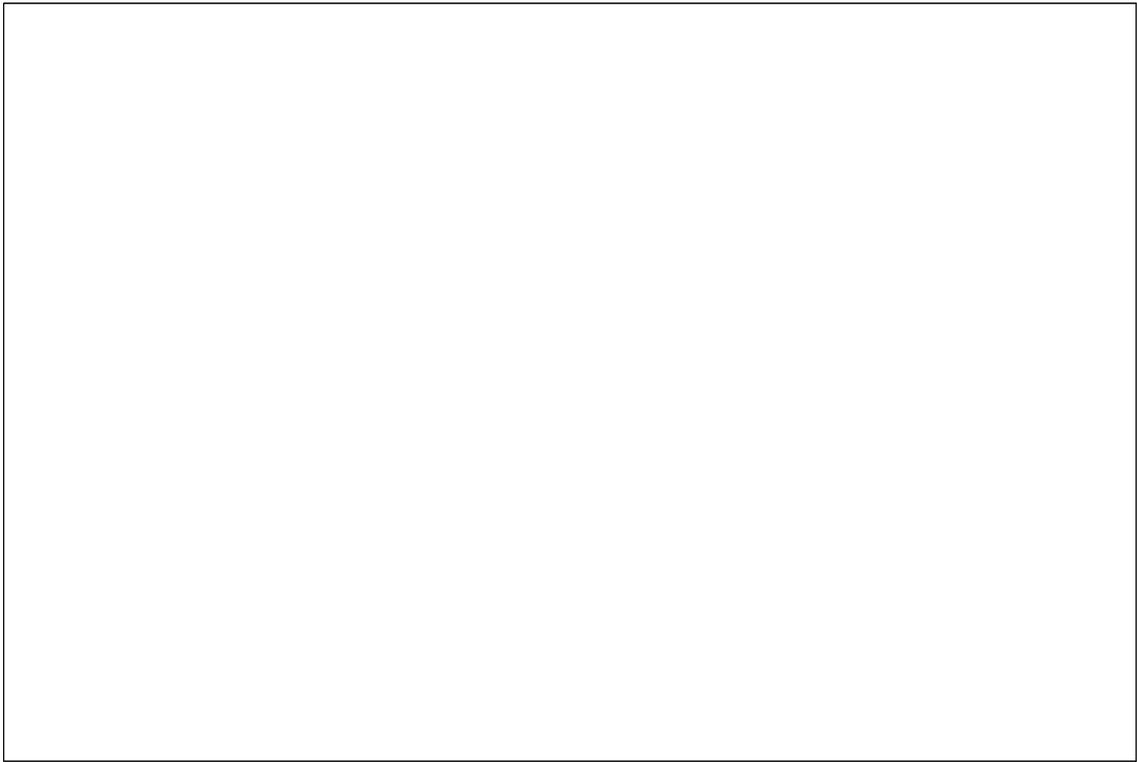
▶ 금오공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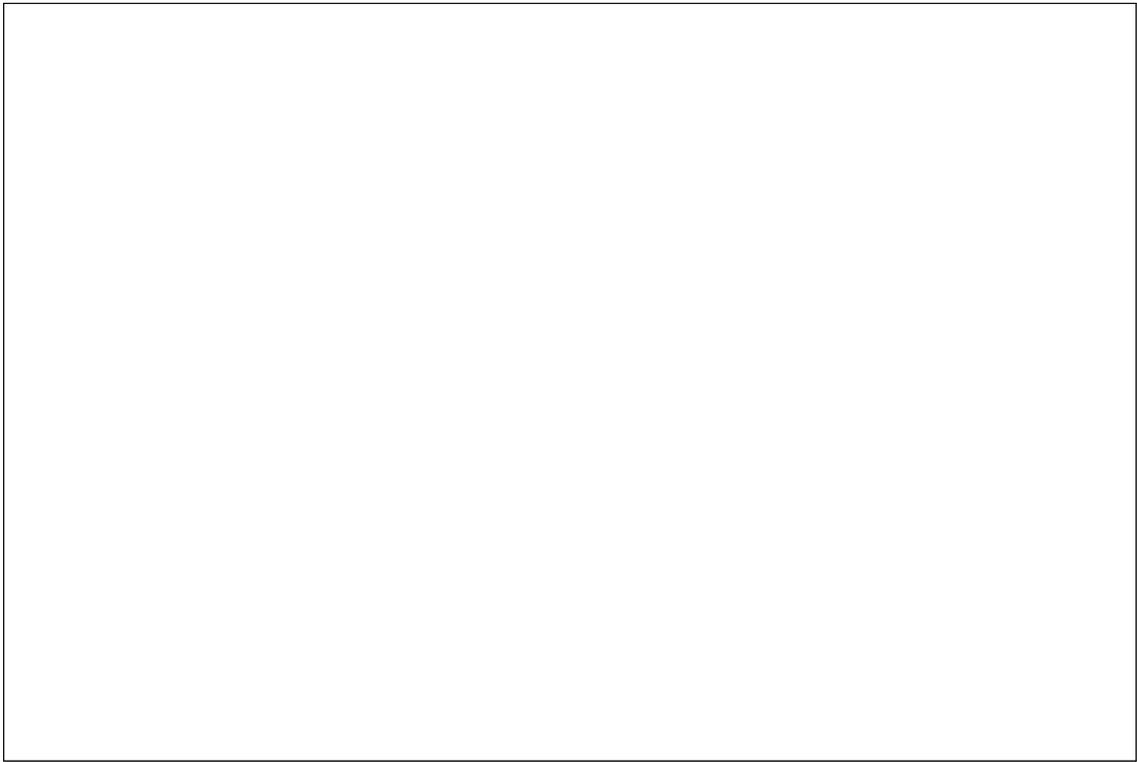
▶ 부산대학교



▶ 전남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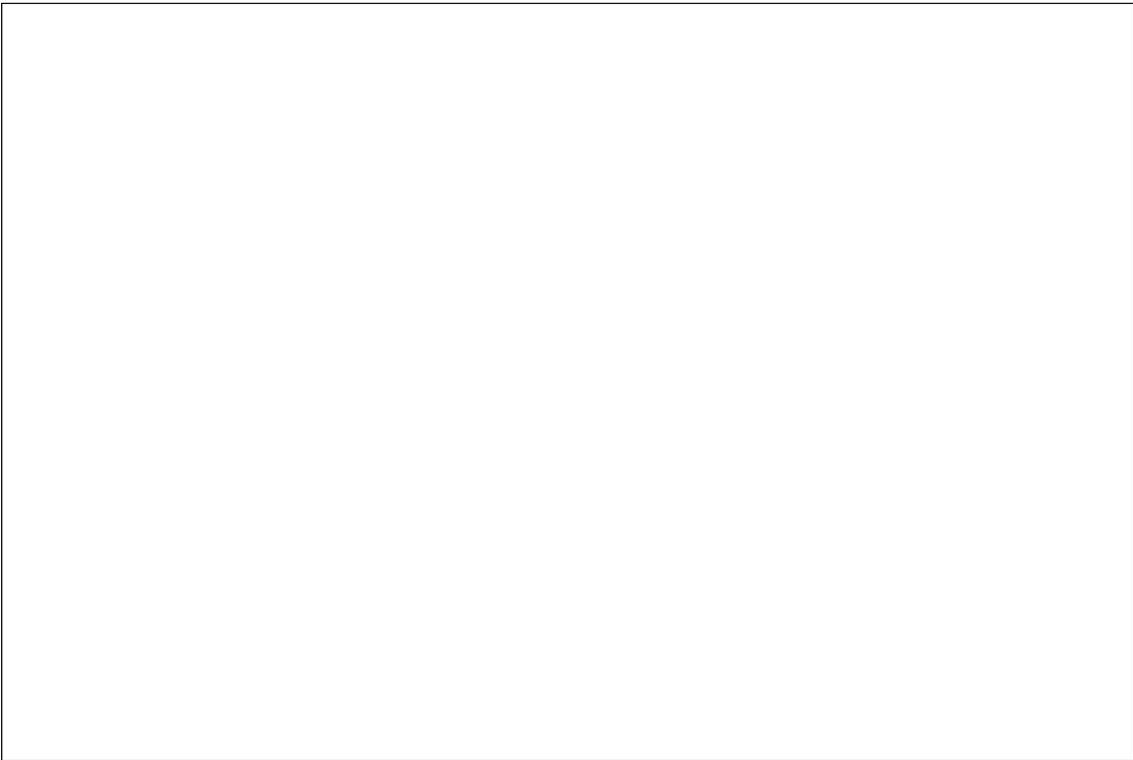
▶ 제주대학교



▶ **충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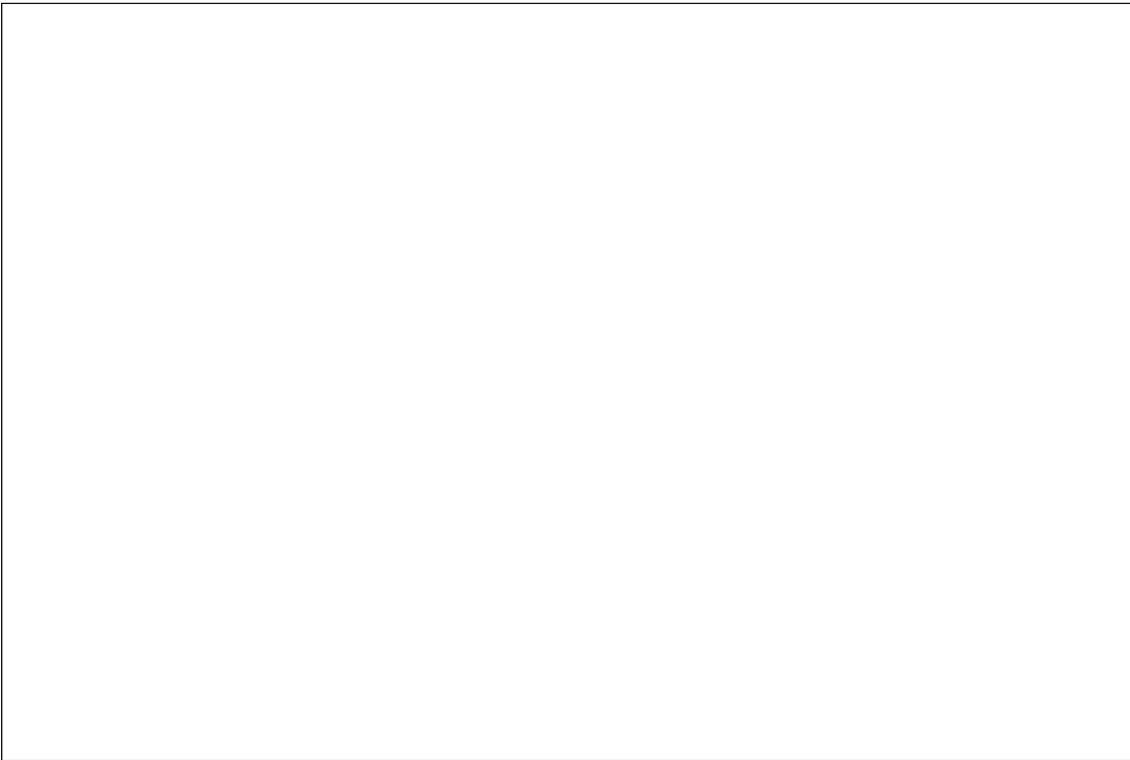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한밭대학교



## 2. 지회 활성화 및 조합원 확보 방안

◎ 현황: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 부산대 등에서 심각한 조합원 이탈 혹은 정체 현상 발생. 조합원 축소 현상은 특히 개별 납부 지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활성화 방안:

\*회비 납부: 지회 납부를 원칙으로 함.

- 30인 이상의 지회에서는 원천징수 방식의 조합비 징수 방안 강구
- 원천 징수가 어려운 지회에서는 지회장 계좌를 통한 징수
- 매달 말일까지 본조 납입금 납부
- 미납 지회는 본조 사무국장의 전화 독촉

\*홈페이지 운영

- 이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지회를 제외하고, 지회 홈페이지 공동 제작 및 운영

\*지회 강화를 위한 본조 지도 방문

- 월별 방문 지회 확정, 지회활성화 방안 내용 구성 등
- 방문 2주전 지회장에게 지회 활성화 계획 제출 요구
- 월별 각 지회방문 및 지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회 조합원 현황 파악

- 연 1회(12월 말) 조합원 현황 본조 보고

이름	단과대학	학과	이메일	전화번호	조합비납부 현황

\*지회 설립 지원 방안

- 지회 설립을 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회 설립 매뉴얼, 지회 업무 매뉴얼, 국교조 홍보 자료, 국교조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국교조 엠블릿 등의 자료 제공.
- 지회 설립을 위해 국교조 활동 관련 설명회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
- 국교련 등과 연대하여 지회 설립을 유도하고, 지회가 설립되지 않은 대학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지회 설립 방법과 장점 등을 홍보하는 메일을 정기적으로 발송.

\* 비지회 조합원 관리: 지회가 설립되지 않은 대학에서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 대학별로 리스트 작성, 매월 재정비

### 3. 지회 활성화 및 조합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



### Ⅰ 제도의 배경과 취지

- 각 기업의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의 동의하에 일반 조합원과 같은 임금과 대우를 받으면서 조합원을 대표하여 노조활동 업무만 하는 자를 “노조전임자”라고 함.
  - 1997년 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제한없이 노사합의로 노조전임자 활동이 보장됨.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 1997년 날치기 노동법 제정 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13년간 법의 시행을 유예함.
  - 정부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치는 명목상 노조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절대다수가 기업별 노조로서 재정기반이 취약 약점을 거남하여 노조 활동가의 수를 줄이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음.
  - 이에 정부도 헌법상 보장된 노조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된다는 비판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중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의 노조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보장하게 됨.
- 국제기구의 권고,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정비
  - ILO(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입법적 관여 대상이 아니라며 금지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 권고
  - 2020년 ILO 핵심협약(제87호, 제98호 협약) 비준하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근본 틀 유지

### Ⅱ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내용

- 기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 삭제
-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 노사합의 또는 사용자 동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을 정한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규정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기존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정부의 공익위원 추천권 배제)

### ③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기본내용

-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의의
  - 교원노조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원은 보수의 손실 없이 교섭 및 체결 권한을 가진 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교원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5조의2 제1항).
- 근무시간 면제한도 설정시 고려사항
  - 교원의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단위를 기준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강사는 제외)인 대학교수는 개별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교원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음.
    -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 교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교원노조법 제4조 제1항),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4조 제2항).

▶ 교섭구조

- : 유·초·중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1호),
- : 대학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2호).

▶ 노조활동 범위

- : 교원 노사관계 당사자는 교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 : 단체협약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 라고 되어 있으나 핵심적인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협의 의제에 해당될 수 밖에 없음.

< 참고 > 민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과거 운영사례 및 고시내용

**붙임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과거 운영사례 및 고시**

<제1기 근면위>

**① 위원명단**

	'10.2월(위촉일 기준)		'10.5월(의결일 기준)	
공익 위원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태기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박준성	
	김동원	고려대 교수	김동원	
	이종훈	명지대 교수	이종훈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이상희	
근로자 위원	백헌기	한노 사무총장	백헌기	
	손종홍	한노 사무처장	손종홍	
	김주영	한노 부위원장	강승철	민노 사무총장
	이경우	법무법인 한결대표	박조수	민노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	김인재	
사용자 위원	이동응	경총 전무	이동응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박종남	
	배상근	전경련 상무	배상근	
	백필규	중기연 연구위원	백필규	
	조영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대표	조영길	

**② 운영경과**

- '10.2.26 노·사 단체 및 정부추천 공익위원 각 5명, 총 15명으로 구성
  - \* 노동부장관,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10.2.26)
  - \* 1기 근면위 당시에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의결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
- '10.3.5~4.29 노동조합 활동 실태조사 실시 및 회의개최(15차)
- '10.5.1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찬성 9, 반대 1, 기권 5)
- '10.5.14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10.7.1 시행)

노동부 고시 제2010 - 3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4일

노동부 장관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 ~ 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 ~ 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 ~ 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 ~ 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 ~ 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 ~ 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 ~ 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 ~ 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 ~ 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2. 적용 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 부 칙

(최초로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특례)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00명 ~ 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 ~ 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 ~ 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 ~ 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 ~ 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 ~ 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 ~ 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 ~ 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대 상	추가 부여 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광역자치단체 개수	시 간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5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10%
	6~9개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20%
	10개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30%
<p>* 광역자치단체 개수 산정기준</p> <p>①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p> <p>②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2. 부 칙

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2013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정 전후 비교>

2010년 근로시간 면제한도		2013년 근로시간 면제한도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1명 ~ 49명	1,000시간 이내	99명 이하	2,000시간 이내
50명 ~ 99명	2,000시간 이내		
100명 ~ 199명	3,000시간 이내	100명 ~ 199명	3,000시간 이내
200명 ~ 299명	4,000시간 이내	200명 ~ 299명	4,000시간 이내
300명 ~ 499명	5,000시간 이내	300명 ~ 499명	5,000시간 이내
500명 ~ 999명	6,000시간 이내	500명 ~ 999명	6,000시간 이내
1,000명 ~ 2,999명	10,000시간 이내	1,000명 ~ 2,999명	10,000시간 이내
3,000명 ~ 4,999명	14,000시간 이내	3,000명 ~ 4,999명	14,000시간 이내
5,000명 ~ 9,999명	22,000시간 이내	5,000명 ~ 9,999명	22,000시간 이내
10,000명 ~ 14,999명	28,000시간 이내	10,000명 ~ 14,999명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36,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36,000시간 이내

2010년 근로시간 면제한도	2013년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업장 분산에 따른 가중치 없음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업(장) 전체 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른 가중치 · 2~5개인 경우 10% 할증 · 6~9개인 경우 20% 할증 · 10개 이상인 경우 30% 할증

## 1. 현재 상황

- 제1차 국교조-교육부 단체협약 합의안

## \*단체협약 체결 내용

제4장제10조(임금 및 수당 등) 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에게 연구수당 및 교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수당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교육부의 2차례 인사혁신처에 대한 수당조정 요구 거부  
(참고자료 1: 대학교원 교직수당 조정 요구서; 대학교원 연구수당 조정 요구서)
- 인혁처 거부의 주요 이유: 교원의 교연비 수령

## 2. 전략

- 교연비는 별도 사업비이므로 임금인 수당 요구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국교조는 1차 단협에서 이미 수당의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교연비를 수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교육부의 부서 조정에 따라 교연비의 성격과 1차 단협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지만 인혁처는 교수단체 혹은 교수노조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함.
-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와 국교조의 간담회 자리를 주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24년 제1차 정책 협의회에서 피력하였음.
- 교육부가 3차 수당조정 요구를 직접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국교조가 인혁처를 만나 설득작업을 해야 함.
-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원 급여체계를 분석하고 수당 신설의 근거를 마련함.

# 대학교원 교직수당 조정 요구서

## 1 요구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 2. 교육 및 연구 분야 - 라. 대학교원 교직수당을 신설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중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
- 신구조문대조표(수당규정 별표11)

현행	개정안			
< 신 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교육 및 연구 분야	라. 대학교원 교직수당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중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조교수 : 월 450,000원 부교수 : 월 550,000원 교수 : 월 650,000원

## 2 소요재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국립대학 교원 (15,339명)	109,732,200 천원	· 조교수 : 2,877명 × 450천원 × 12월 = 15,535,800천원 · 부교수 : 2,506명 × 550천원 × 12월 = 16,539,600천원 · 교수 : 9,956명 × 650천원 × 12월 = 77,656,800천원	신설

## 3 필요성

### 1. 업무환경 측면

-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공무원법」 제35조제4호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직수당’ 지급을 관

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제35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국립 대학의 교원(이하 '대학교원')을 교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이는 대학교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대학교원은 초·중등교원에 비해 재직기간 중 급여 및 퇴직 후 연금소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2. 보수 측면**

- 수당조정시 해당업무 종사자의 연간 총보수(봉급+수당+경비) 지급액 변경내역 기재

- 대학교원(10호봉)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이 없는 조교수 임용 당시 기준

(단위 : 원)

구분	합계	봉급	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특수업무수당 (교직수당)
현행	39,405,600	34,296,000	-	1,680,000	3,429,600	-
조정	44,805,600	34,296,000	-	1,680,000	3,429,600	5,400,000

# 대학교원 연구업무수당 조정 요구서

## 1 요구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 - 2. 교육 및 연구분야 - 가. 연구업무수당 10)을 신설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중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지급
- 신구조문대조표(수당규정 별표11)

현행	개정안			
< 신 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교육 및 연구 분야	가. 연구업무수당	10)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중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조교수 : 월 450,000원 부교수 : 월 550,000원 교수 : 월 650,000원

## 2 소요자원 : 인원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대상 및 인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현행 대비 인상률
국립대학 교원 (15,339명)	109,732,200천원	· 조교수 : 2,877명 × 450천원 × 12월 = 15,535,800천원 · 부교수 : 2,506명 × 550천원 × 12월 = 16,539,600천원 · 교수 : 9,956명 × 650천원 × 12월 = 77,656,800천원	신설

## 3 필요성

### 1. 업무환경 측면

-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교육공무원법」 제35조제4호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연구수당

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 34조 및 제35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국립대학의 교원(이하 '대학교원')을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이로 인해 대학교원은 교육행정기관 및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타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에 비해 재직기간 중 급여 및 퇴직 후 연금소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생략)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710

- 대학교수도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므로, ...(중략)...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문의 발전과 피교육자인 대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원의 자격기준도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 2. 보수 측면

- 수당조정시 해당업무 종사자의 연간 총보수(봉급+수당+경비) 지급액 변경 내역\* 기재

- 대학교원(10호봉)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이 없는 조교수 임용 당시 기준

(단위 : 원)

구분	합계	봉급	수당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명절 휴가비	특수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현행	39,405,600	34,296,000	-	1,680,000	3,429,600	-
조정	44,805,600	34,296,000	-	1,680,000	3,429,600	5,400,000

## 국립대학교 무상교육

<남중웅, 최인철>

### 가. 개요

#### ◆ 국립대학 무상교육은 국가경쟁력 회복의 차원이다.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22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이 46위에 머물고 있다(별첨 1). 지난 10년간 우리 대학 경쟁력이 60개 조사 국가 중 줄곧 40위권과 50위 권을 유지했던 것은 우리 전체 국가 경쟁력이 지난 10년간 하향곡선을 긋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 주요 원인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방치와 낮은 재정투자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의 64.3%에 불과하다(별첨 2). 국립대학 무상교육은 우리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액을 높임으로서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무너져 가는 지역의 국립대학에 소속된 대학원 육성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양성이 가능해진다.

#### ◆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획기적 실마리다.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전체 고등교육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지만 그 타격은 지역에 산재한 국립대학에 집중되었다. 한때는 지역의 자부심이었고 모두가 선망하던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인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광역화와 경제단위 및 문화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현상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공동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지역균형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더욱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더 집중되었다는 것은 국립대학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결국 거짓이었음을 들어내는 것이다.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주요 실마리는 더 이상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고 지역의 우수한 국립대학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 무상교육은 이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책이다. 한국의 국립대학교는 총 37개교인데, 이 중에 7개교만 수도권에 소재하고 나머지 30개교는 지방에 소재한다(별첨 3). 37개 국립대학교에는 소위 9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와 지방 중소도시에 소재한 10개 국가중심대학교, 8개 특수목적대학, 그리고 10개 교육대학이 속해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 무상교육 정책은 우수 경제 단위들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지역의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주요한 실마리로 기능할 수 있다.

### ◆ 왜 국립대학인가?

국립대학은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정부이다. 따라서 대학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이 민간에서 나오는 사립대학과는 구별되므로 국립대학에 대한 무상등록금화의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학들의 경쟁력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도 국립대학에서 무상등록금화를 우선 시행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는 일단 사립재단의 역할에 대한 재고와 국립대학 무상등록금화의 영향을 분석하면서 향후 단계적으로 건전 사립대학으로도 확대한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국립대학 등록금 무상화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상징하는 국립대학에서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전체 고등교육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문제는 재원이 아니라 의지이다.

국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은 수도권 사립대학의 54% 수준을 유지한다. 국립대학 학부생들의 등록금 자부담률 또한 전체 등록금의 30%를 조금 넘는 상황이다(별첨 5). 이는 대학의 자체 장학금 체계와 국가장학금의 증대에 따른 현상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국가장학금의 잉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무상등록금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 국가장학금이 32조 지출되는데 이에 2조6천억을 추가하면 2026년 전면적 무상등록금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자부담율이 이미 31%에 불과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학금 잉여의 문제를 고려하면 추가 소요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분석이 더 합리적이다. 문제는

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에 있다.

## 나. 정책 방향

### ◆ 국립대학교 무상교육은 국립대학교 육성 정책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의 육성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이 국가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힌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목표가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계획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국립대학 무상교육 정책이다. 국가가 운영과 육성에 책임을 지는 국립대학부터 제대로 된 의무를 다한다면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대학들도 결국 이에 맞추어 대학 정상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국립대학교 1인당 교육비를 수도권 주요 대학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3개 거점국립대학의 경우 평균 1천 8백만 원 수준에 그쳤지만, 서울대는 4천 8백만 원 그리고 과학기술원의 경우 약 7천만 원에 달한다. 거점국립대의 교육비는 서울대 대비 36.8% 그리고 과학기술원 대비 23.7%에 불과하다(별첨 4, 5). 이들 3개 대학을 수도권 5개 사립대학과 비교하여도 2/3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대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4개 과학기술원 학생의 1인당 장학금은 연평균 등록금을 초과하는 수준이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무상등록금 정책은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정상화하는 첫 단추이다.

### ◆ 국립대학교 무상교육이 국립대학교 재정 압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이래 지속되어온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을 황폐화 시켰다. 거점국립대학의 경우 2008년 대비 2018년의 순등록금이 54%에 불과하다. 순등록금이란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에서 장학금 지출을 빼고 순수히 대학의 운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한다(별첨 6).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촉발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하나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별첨 7). 통계를 보면 정부는 2011년에서 2018년 까지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400억원 정도 늘렸지만 그 전체를 국가장학금 증액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 실시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의 몫으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이 쇠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상교육 정책의 실시가 정부의 재원 마련을 통해 철저히 계획된 상황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다. 추진 계획

◆ 국립대학교 학부생 및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8년 전면 실시함.

- 2025년 : 학부 4학년 및 대학원 1학년 무상교육 시행
- 2026년 : 학부 3, 4학년 및 대학원 전면(1학년, 2학년) 무상교육 실시
- 2027년 : 학부 2, 3, 4학년 및 대학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 2028년 : 학부 및 대학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

◆ 필요예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장학금의 잉여분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

- 국립대학교 재학생 수 : 200,000 명(학부생 정원 내 재적생), 150,000 명(방통대 정원 내 학부생 재학생), 60,000 명(석박사 포함)
- 국립대학교 등록금 평균액 : 420만 원(2022년 37개 국립대학교 평균), 75만 원(방통대)
- 국립대학교 장학금 지급 및 자부담 비율(31%, 37개 국립대학교 평균)

구분	장학금 지급 비율	자부담율
학부	69% (방통대 30%)	31% (방통대 70%)
대학원	20%	80.0%

국립대학 학생 1인당 평균 연 장학금: 290만원

(별첨 8 참조)

### • 무상등록금 소요예산 산정방식

학부 : 정원 내 재학생 정원 × 학부 등록금 평균액 × 학부생 자부담율

대학원 : 대학원생 × 대학원 등록금 평균액 × 대학원생 자부담율

- 무상등록금 소요예산(22년 대교협 통계 기준)

총 학생정원: 353,320명 (법인대학 제외 37개교)

방송통신대 제외 학부생: 200,000 명

대학원생: 60,000 명

연 1인 평균 등록금: 420만원

학부생 연 평균 1인 장학금: 290만원

대학원생 연 평균 1인 장학금: 84만원

학부생 무상 등록금 재원: 130만원 \* 200,000 = 260,000,000,000원

대학원생 무상등록금 재원: 336만원 \* 60,000 = 201,600,000,000원

구분	예산(억 원)
학부	2,600
대학원	2,016
소계	4,616

#### ◆ 재원 마련 방안

- 국가장학금 소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는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의 확대 혹은 잉여금의 창출이 예상될 수 있음.
- 국가장학금의 지급 방식을 현행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입학 자원의 감소분에 상응하는 국가장학금 잉여분이 발생
- 2024년 국가장학금 예산 4.7조 원이 향후 유지 혹은 증가하고 선정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국립대학 무상교육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분이 발생함.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무상등록금 정책은 국가장학금 여유분으로 충당 가능함.

#### ◆ 예산 4,160억 원을 국가장학금 여유분에서 조달

년도	가용 예산 (국가장학금 잉여분 추정액)	소요 예산	국가장학금 잉여금 총당 비율
2025	0.2조 원	1,930억 원 (학부 4학년, 대학원 절반)	97%
2026	0.5조 원	3,860억 원 (학부 3, 4학년, 대학원 전면)	77%
2027	1조 원	4,510억 원 (학부 2, 3, 4학년, 대학원)	45%
2028	1조 원	4,160억 원 (학부 전면 실시, 대학원)	42%

※학업성취도 하위 10%를 제외하는 등의 운영상의 기술이 가미된다면 더 작은 금액의 재원이 소요됨.

※방송 통신대의 경우 낮은 등록금을 감안하면 작은 금액의 추가 비용으로 무상등록금화 가능.

◆ 29년부터 국립대학 무상등록금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법인 국립대학과 건전 사립대학으로 정책의 확장을 계획할 수 있음.

(별첨자료)

\* 별첨 1: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순위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가경쟁력	26	25	29	29	27	28	23	23	27
교육경쟁력	31	32	33	37	25	30	27	30	29
대학교육경쟁력	53	38	55	53	49	55	48	47	46
참여국	60	61	61	63	63	63	63	63	63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포커스, 제1호, 2022.11.7.,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 별첨 2: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의 주요국가비교(기준연도: 2019년)

(단위 : PPP환산액, \$)

구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OECD 평균	9,923	11,400	17,559	
한국	13,341(134.4%)	17,078(149.8%)	11,287(64.3%)	
그리스	7,279	6,728	4,192	
참고국가	캐나다	10,570	14,564	22,335
	프랑스	9,312	13,475	18,136
	일본	9,379	11,493	19,504
	영국	11,936	13,041	29,688
미국	13,780	15,538	35,347	

※1.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 (2019년) 864.63원/\$

※2. 한국 ( )의 %는 (한국/OECD평균)×100%임

※3.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포커스, 제1호, 2022.11.7., 2022 「OECD Education at a Glance」

**\* 별첨 3: 국립대학교 현황**

위치	거점국립대학	국가중심대학	교육대학	특수목적
서울			서울교대	한국체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한국방송통신대
경기		한경대학교		
인천			경인교대	
강원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춘천교대	
충청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밭대학교, 공주대학교	청주교대, 공주교대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경상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금오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전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교대, 전주교대	목포해양대학교
제주	제주대학교			

**별첨 4: 학생 1인당 공교육부 비교(23년 이은주 의원실 제공자료)**

서울대	연고대	지방거점국립대	국공립대
5804	2250	2230	2011

### 별첨 5: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현황

◆자료기준일 : '22 회계연도

(단위 : 억원, 명, 만원, %)

구분	'22년			'21년			학생 1인당 교육비 전년 대비 증감률 [G=(C-F)/F]	
	재학생수 <sup>1)</sup> (A)	총 교육비 <sup>2)</sup> (B)	학생1인당 교육비 (C=B/A)	재학생수 (D)	총 교육비 (E)	학생1인당 교육비 (F=E/D)		
전체(193개교)	1,645,239	304,493.0	1,850.8	1,682,340	286,546.8	1,703.3	8.7	
설립	국·공립 (39개교)	398,048	90,782.0	2,280.7	406,955	83,773.2	2,058.5	10.8
	사립 (154개교)	1,247,191	213,711.0	1,713.5	1,275,385	202,773.6	1,589.9	7.8
소재지	수도권 (73개교)	736,198	150,160.8	2,039.7	745,340	139,286.4	1,868.8	9.1
	비수도권 (120개교)	909,041	154,332.1	1,697.7	937,000	147,260.5	1,571.6	8.0
대학 유형	일반대학 (183개교)	1,623,856	301,759.2	1,858.3	1,660,460	283,921.4	1,709.9	8.7
	교육대학 (10개교)	21,383	2,733.8	1,278.5	21,880	2,625.4	1,199.9	6.6

주 1) 재학생수 =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수

2) 총 교육비 = (국·공립) 대학회계+발전기금회계+산학협력단회계 중 교육투자 금액

(사립) 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중 교육투자 금액

※ 교육투자 금액 : 인건비, 물건비, 연구지도경비, 장학비, 경상비, 산학협력비, 도서관임비, 기계기구매입비(교육용) 등 학생의 교육비로  
계투자 되는 비용

### 별첨 6: 등록금 현황

〈표 1〉 연도별 평균 등록금 및 등록금 인상 상한률 적용 시 등록금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1년 대비 증감률		
소비자 물가인상률	4.0	2.2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	-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89.9	91.8	93.0	94.2	94.9	95.8	97.6	99.1	99.5	100.0	102.5	107.7	110.35*	-		
등록금 인상 상한률	5.20	4.85	4.55	3.75	2.40	1.65	1.50	1.80	2.20	1.90	1.20	1.70	4.05	-		
재 민 비	국공립	명목	4,319	4,081	4,101	4,103	4,119	4,121	4,133	4,151	4,167	4,182	4,186	4,191	4,203	△2.7
		실질	4,807	4,445	4,409	4,356	4,342	4,303	4,233	4,189	4,189	4,182	4,084	3,891	3,808	△20.8
		인상 상한률 적용	등록금	4,564	4,786	5,003	5,191	5,315	5,403	5,484	5,583	5,706	5,814	5,884	5,984	6,226
	사립	명목	7,684	7,392	7,355	7,340	7,353	7,370	7,400	7,432	7,455	7,478	7,490	7,521	7,569	△1.5
		실질	8,552	8,051	7,908	7,792	7,752	7,695	7,579	7,501	7,495	7,478	7,307	6,983	6,859	△19.8
		인상 상한률 적용	등록금	7,896	8,279	8,655	8,980	9,195	9,347	9,487	9,658	9,871	10,058	10,179	10,352	10,771
	명목 대비 비율	△5.4	△14.7	△18.0	△21.0	△22.5	△23.7	△24.6	△25.6	△27.0	△28.1	△28.9	△30.0	△32.5	-	
	명목 대비 비율	△2.7	△10.7	△15.0	△18.3	△20.0	△21.1	△22.0	△23.0	△24.5	△25.7	△26.4	△27.3	△29.7	-	

주 1) 대상 : 4년제 대학(일반, 산업, 교육) 대상 분석(방송통신대, 사이버대, 기술대, 각종대학, 특별대학, 특별법국립 제외), 캠퍼스, 분교 포함

2) 평균등록금 = 학부 등록금 총수입(계열별·학년별) / 입학정원, 연간 기준임

3) 2023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4) △는 감소를 의미함

5) 실질 : 실질적인 경제 활동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명목(경상가) 금액을 조정

자료: 대학정보공시(23.05.04. 인출),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23.05.09. 인출)

[그림 1] 설립유형별 평균 실질 등록금 변화 추이



[그림 2] 지역별 사립대학교 평균 실질 등록금 변화 추이



별첨 7: 재정 지원 현황

<표 II-5>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기준 국·공립대학 재정지원 현황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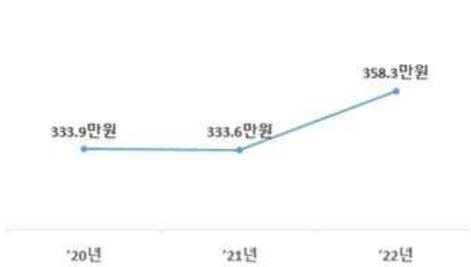
회계 연도	총 재정지원액 (A)	경상비 제외 후 재정지원액 (B)	국가장학금 (C)	국가장학금 비율 (C)/(B)*100	기관 대상 재정지원액 (D)=(B)-(C)	기관 대상 지원액 비율 (D)/(A)*100
2011	42,510	15,853	1,482	9.4	14,371	35.1
2017	50,014	20,735	6,148	29.7	14,586	29.2
2018	51,071	20,828	6,037	29.0	14,791	29.0

자료: 서명인 외(2020), p.133. 참조 후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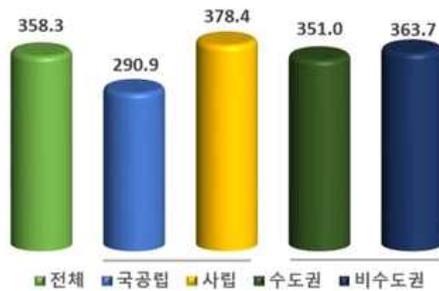
별첨

별첨 8: 장학금 현황

2020~2022년 학생 1인당 장학금



2022년 학생 1인당 장학금(만원)



## 교수신문

### 22대 총선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 분석

민주당, 국립대·전문대부터; 국민의힘, 국가장학금 확대; 녹색정의당 ‘지방대’부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정당들이 ‘대학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 방안으로 요구가 많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진보 정당은 ‘제정’ 공약을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수노조·민교협·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대학원생노조 등이 참가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지난 27일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공대위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개혁신당·진보당)에 고등교육 10대 정책 제안과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책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보수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은 총체적인 고등교육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민의힘은 답변조차 하지 않았고,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진지한 접근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총평했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 대부분 정당은 단계적 무상화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와 전문대부터,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보당은 등록금 부담 수준의 단계적 무상화, 국민의힘은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를 공약했다. 공대위는 “국가장학금으로 약 4조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의 GDP나 정부 예산 수준을 감안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평가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는 지난달 14일 열린 올해 첫 정기 총회에서 국·공립대 전면 무상등록금제 추진을 논의한 바 있다.

##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 비교

고등교육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대학 무상교육	국립대 전문대부터	국가장학금 확대	지방대부터	-	반값등록금→75%→무상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검토 필요	-	제정	거점국립대 '예산 폭탄' 투입	제정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찬성 입장	-	보장	-	보장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	단계적 개선	-	처우개선	-	전폭 수용
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단계적 접근	-	폐지	-	폐지
대학강사 방학중 임금 정상화	찬성 입장	-	처우개선	-	전폭 수용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 필요	-	처우개선	-	전폭 수용
대학 공너를 강의실 해소	찬성 입장	-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	전폭 수용
대학원생 근로자성 보호	찬성 입장	-	대학원생 노동권 보호	-	전폭 수용
전국 대학원생 실태조사 정례화	찬성 입장	-	실태조사	-	전폭 수용

※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교수노조·민교협·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대학원생노조),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 비교·분석 자료, 2024년 3월 27일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책과 공대위 질의서 답변을 기준으로 분석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갈 길이 멀다…비정년트랙은 제도 개선 공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대학 무상교육 1단계 추진시 대학별 등록금 수입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도입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정 지원 방식을 병행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을 투입해 지역인재 육성과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지역내 불균형과 국립-사립간 격차라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허울좋은 대책”이라고 평했다.

공대위는 5개 정당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공약은 없지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기타 의견을 냈다. 워낙 광범위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단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비정년트랙 제도가 명확히 규정된 별개의 고용형태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이 정책 공약 부재의 이유일 것”이라며 “비정년트랙 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정상화’에 대해서는 진보당은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녹색정의당은 대학 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안정성 제고와 처우 개선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별도 공약은 없었다. 공대위는 “민주당은 강사법 개정 당시 집권 여당이었으며, 현재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인만큼 사립대강사처우개선사업비를 복원하고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봉역 기자 [bong@kyosu.net](mailto:bong@kyosu.net)

## 22대 총선' 정당별 고등교육 공약 비교분석...미흡한 공약, 안이한 인식수준

대학지성 : 고현석 기자 승인 2024.03.27. 18:45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고등교육 위기 극복의 대안 제시를 위해 5개 정당의 고등교육 공약을 비교 분석한 보도자료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정당으로 제한했다. 정책제안서 및 질의서를 보낸 이들 5개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에서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답변을 보내지 않은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정책을 기준으로 고등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공대위의 분석 결과, 보수 양당은 총체적인 고등교육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질의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아 과연 고등교육 문제를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그에 반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

공대위는 거대 보수 양당이 비례위성정당까지 앞세워 국회 의석의 상당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같은 상황 인식과 대책으로는 문제해결은커녕 고등교육의 위기를 가뜰이나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1. 대학 무상교육

	입장	공약
더불어민주당	찬성	단계적 무상교육 추진 검토중 - 1단계: 국립대·전문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우선 추진
국민의힘	—	-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녹색정의당	찬성	대학 무상교육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무상 기숙사 - 학자금 무이자 대출
개혁신당	—	없음
진보당	찬성	반값 등록금 → 75% → 무상화 단계적 실현 - 가처분 소득 기준 표준등록금 산출 - OECD 평균 수준 국고 지원 확대 - 사립대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공영화 실현

○ 대부분 정당들이 단계적인 무상화 접근법을 택함.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와 전문대부터 무상화,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부터 무상화, 진보당은 등록금 부담 수준의 단계적 무상화. 국민의힘은 장학금 확대에 그침. 개혁신당은 관련 공약이 없음.

○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약 4조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의 GDP나 정부 예산 수준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함. 정부와 국회의 의지에 달린 문제임.

## 1. 주요 쟁점

### 가. 사무실 지원:

- 교육부: 이사비용 포함 사무실 지원을 일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 국교조: 이후 국회 등을 통해 지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 전달

### 나. 연구수당 및 교직수당:

- 국교조: 인사혁신처의 주된 거부 이유인 교연비 수령의 문제가 임금인 수당 수령과는 무관함을 주장.
- 교육부: 이미 2차례 수당조정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3번째도 거절되면 이후 수당조정 요구가 불가능. 국교조와 인혁처 간의 간담회를 성사하도록 노력해주겠다는 입장 전달.
- ※ 공문을 보내 국교조 인혁처 간담회 성사를 제촉하고 그 이전에는 3차 수당조정요구를 인혁처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다. 대학평의원회 활동의 실질적 보장:

- 교육부: 대학평의원회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개선하겠다고 약속.
- ※ 다시 공문을 보내 대학평의원회 관리 감독 부서가 정해졌는지 묻고 압박할 필요 있음.

### 라. 교연비 지급 가이드라인:

- 국교조: 실제 근무 기간이 아닌(병가, 연가, 파견, ...) 기간에 발생한 교연비 지급 사유에 대해서도 교연비가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
- 교육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
- ※ 다시 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 수정을 압박할 필요 있음.

### 마.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 기준 변경 요청:

- 국교조: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 연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
- 교육부: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 ※ 다시 공문을 보내 확인할 필요 있음.

## 2. 질의서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교육부 2024년 제1차 정책협의회 질의서

#### I. 단체협약 이행상황

##### 1. 국교조 사무실 지원 <최인철>

▷질의: 2020년 단체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국교조에 사무실 임대 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서 해당 경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은 단체협상을 무시한 초법적인 결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라도 단체협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무실 임대 경비를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또한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에 따라 국교조가 부담해야 할 제반 비용을 교육부가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이미 국교조에게 이사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 \*단체협약 체결 내용

제6조(노조사무실 지원 등) ① 교육부는 관련 법령·판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교조에 노조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교원노조법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2. 연구수당 및 교직수당 <최인철>

▷질의: 교직 수당과 연구 수당의 신설은 국교조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책협의회에서 국교조는 교육부에 대해 연구 수당 및 교직 수당 신설을 위해 실무적 차원에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반응을 이유로 스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단체협약 체결 내용**

제4장제10조(임금 및 수당 등) 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에게 연구수당 및 교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당 수당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3. 교육·연구 학생 지도비(교연비) 제도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계획 <이상일>**

▷질의: 교육부는 대학의 교연비 사용 전반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제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대학의 자율성 훼손입니다. 실제로 교연비와 관련한 소송 등이 발생하였을 시 교육부는 교연비의 집행이 대학의 소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연비의 집행과 사용에 관한 전권을 대학으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제10조(임금 및 수당 등) ④ 교육부는 국교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성과급적 연봉제의 처우개선요율 <강종수>**

▷질의: 처우개선요율은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 인상분과 이에 따른 연간 연동수당 인상액을 합친 것과 동일한 보수 인상 효과를 반영(2013년도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 p.31)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때 처우개선분은 공무원 보수인상율과 호봉승급분 및 승진시 가산호봉 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통상 공무원 보수인상율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23년도는 공무원 보수인상율과 처우개선분이 1.7%로 동일합니다. 이 경우 호봉승급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산정방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두 번째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년보장 교원에게 적용되는 교육연구급은 그 취지와는 달리 근무연수 31년 이하에게만 2,074,000원을 적용하고, 그 이상에게는 절반가량만 적용하여 보수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공무원 임금인상율(%)	국립대교수 처우개선요율
2024	2.5	(미정)
2023	1.7	1.7
2022	1.4	1.539
2021	0.9	0.962
2020	2.9	2.992
2019	1.8	1.970

2018	2.6	2.791
------	-----	-------

②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 (교육연구급) 정년보장 교원에 대하여 성과에 따른 성과연봉 차등지급과는 별도로 안정적 교수·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일정 보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급 지급

<교육연구급> (단위: 원)

근무연수	교육연구급
31년 미만	2,074,000
31년 이상	1,023,000

\*단체협약 체결 내용

제4장 근로조건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

제10조(임금 및 수당 등) ② 교육부는 대학 교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위한 국교조의 요청 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II. 국립대학 정책 관련 건의 및 질의 사항

### 1. 무전공/무학과 입학제도 <이상일>

▷질의: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입학 정원을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 늘리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국립대학들에 재정지원을 미끼로 무전공제도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교육과 학문생태를 파괴하고, 국립대학이 지향해야 할 기초학문 보호, 학문의 균형적 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때그때 바뀌는 인기 전공 학과의 요구를 대학이 수용한다면 학문의 장기적 정책 수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교육부는 무전공/무학과 입학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어떠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이 제도의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활동 보장과 관리 감독 <최인철>

▷질의: 고등교육법 제 19조의 2 등은 학칙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는 대학평의원회를 고등교육법상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구성원의 의견 수렴, 학교 행정 견제,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2019.08.07., 법제처 법령해석).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경북대학교 등) 학칙과 대학의 주요 결정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통과시키고 이를 총장의 교무 통할권 행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대학평의

원회의 부실 운영 혹은 초법적 운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부서가 대학평의원회의 대학 심의기구로서의 역할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학평의원회가 실질적인 대학 행정의 견제자로서 심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어떤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민주적인 방식의 학장 선출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의 개정 <김영표>

▷질의: 대학의 장인 총장의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대학 구성원의 선거에 의한 방식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장의 경우 여전히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대학에서의 총장에 과도한 권한의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장의 선출 혹은 임명을 대학의 자율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도록 허용하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 4. 교연비 지급가이드라인 개정 <최인철>

▷질의: 교연비 가이드라인에서 “신분변동자(신규, 퇴직, 휴직, 파견, 근무지원, 징계 등) 및 연구년·안식년 교원의 활동 인정 기간은 대학의 실제 근무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실적비용 지급 기준은 대학에서 마련해야 함”으로서 대학 내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교연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 및 연구년 등에도 온라인 등의 학생지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과도한 제약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병 혹은 출산 등에 따른 대학에서의 부재에 대해서도 교연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더욱이 교연비는 사업비에 해당하므로 대학의 실제 근무기간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지침을 삭제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5. 글로벌 사업 <김영표>

▷질의: 정부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범부처와 지자체의 투자를 유도하고 기타 행·재정적 우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재정 지원의 규모, 출처 등이 아직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이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6. 의대 정원 확대 <최인철>

▷질의: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고 각 대학은 이에 맞추어 학칙 등을 개정하고 있거나 이미 개정된 상태입니다. 의료 인력 확

층에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하겠지만, 대학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대학이 추가적으로 떠안아야 교육시설 확충과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전체 의대생 휴학으로 내년에는 2개 학년이 한꺼번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7. 대학교원 정년 67세로 연장 <강종수>

▷질의: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학교원은 늦은 나이에 임용되지만 타 전문직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연금도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수 교수 인력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교조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대학교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숨에 정년을 5년이나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67세까지로 연장하고 점차적으로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부에서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III. 국교조 조합 활동 관련 사항

### 1. 국교조·전국교수노조와 교육부의 단체교섭 <강종수>

▷질의: 지난 4월 5일 국교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단체교섭에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교조와 교수노조는 4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단일 교섭안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많은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일 교섭안에는 사립대학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사립대학과 관련된 요구를 단체협상의 의제로 다룰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 단체협상이 교수노조의 사립대 관련 주장으로 인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교섭단체 분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2023년 단체교섭 진행 경과]

- 4월 5일: 국교조,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발송
- 4월 19일: 교육부,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 4월 25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단체교섭 참여 신청
- 5월 4일: 교육부,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안내 공문 발송
- 5월 26일: 국교조-전국교수노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1차 협의회 개최

- 6월 30일: 국교조-전국교수노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2차 협의회 개최
- 9월 22일: 국교조-전국교수노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3차 협의회 개최

## 2. 근로시간 면제 <남중용>

▷질의: 국교조는 국·공립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교수노조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위해 경사노위는 8월 중으로 그 상한치에 대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국교조 본조의 전임자에 대한 책임시수 면제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교조는 각 대학의 노조지회 전임자와 별개로 본조 차원에서 전임자 책임시수에 면제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경사노위 의결사항(8월 중으로 합의 가능)을 상한치로 적용(9월 1일부터)
- 최대 상한치 고시
- 예 1) 1년 1인 2,000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56주(연가 등 제외)
- 예 2) 교수 1인당 1주 9시간 기준 - 환산하여 전임자 시간 배정

### \*교원노조법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교원: 시·도 단위

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일: 2023. 12. 11.] 제5조의2

#### IV. 기타 국립대 교원 처우 개선

##### 1. 직급보조비 정액 지급 <강종수>

▷질의: 2023년까지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6 [별표 15]에 의하면 학과장은 직급보조비를 400,000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각 대학이 예산 수립을 통해 ‘보직수행경비’를 지급하고 대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허용해 왔었습니다. 2023년 교육부와 의 2차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국교조는 이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고 차후 계속 논의하기로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 5. 개정된 [별표 15]에서는 지급 구분표에서 학과장을 아예 삭제하였습니다. 대신 한국 예술종합학교 학과장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삭제의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변경 사항을 어떻게 우리 국교조에 통보하지 않고 행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2년 5월 체결한 국교조-교육부 단체협약 제7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개정이전)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일부)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장학관·교육연구원(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장학관·교육연구원(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원(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학과장(학장보), 교장·원장, 장학관·교육연구원(4급 상당 직위)	400,000원

국교조-교육부 단체협약(2022) 제7조(자료 열람 및 정보제공) 교육부는 각 대학에 보내는 교원단체 및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공문을 국교조에 제공한다.

##### 2. 퇴직 대학교원에 대한 정부 포상 기준 조정 <김영표>

▷질의: 정부 기준에는 재직 기간 33년 이상인 교원이 훈장을, 33년 미만은 포장, 28년까지 대통령 표창, 25년까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교원이 평균 43세에 임용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023년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일

반공무원의 직급별 훈격등급 결정기준에 맞게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훈종 \ 훈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고	
근정훈장	청조	황조	홍조	녹조	옥조		
일반·정무·별정직 등	장관(급) 이상	차관(급)	1~3급 고위공무원	4~5급	6급 이하 (별정우체국 직원 포함)	직급 (계급)	
연구·지도직 법관·검사·외무공무원	-	차관급 상당직위	1~3급 상당직위	4~5급 상당직위	6급 이하 상당직위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초·중·등	-	40년 이상	39~38년	37~36년	35~33년	재직 년수
	대학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직급

자료 :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p.35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9.10.25.

개정 2020.08.12.

개정 2021.08.13.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조직의 명칭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국교조로 한다. 영어 명칭은 Union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이하 약호는 UKNUP로 한다)로 한다.

**제2조(목적)** 국교조는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여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대하고,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국교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의 보장을 위한 사업
2. 국공립대학교 교육환경, 대학·학문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확대와 확립을 위한 사업
4.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5.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교권보장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 사업
6.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을 위한 복지후생, 문화행사 및 홍보 사업
7. 국제교육기구 및 외국국공립대학교 노조 등과 국제적 연대 사업
8.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설치)** 국교조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충주시에 둔다.

**제5조(법인)** 국교조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제2장 조합원

**제6조(조합원의 자격)**

- ① 전국국공립대학교(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포함)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다만, 강사는 제외) 및 제4

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교원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보직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이 정지된다.

### 제7조(조합 가입과 탈퇴)

- ① 국공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강령과 규약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때
  -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국교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3. 국교조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기타 국교조 소속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9조(의무)** 국교조의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규약 및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 3. 국교조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10조(신분보장)** 조합원이 국교조의 의결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및 징계)

-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강령, 규약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 ③ 포상 및 징계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포상·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징계의 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장 기구 및 회의

### 제1절 총칙

**제12조(기구)** 국교조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전국대의원대회
2. 중앙위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사무처
6. 기타

### 제2절 전국대의원대회

**제13조(지위와 구성)**

-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의장이 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③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⑤ 선거 절차와 방법,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 대의원 선출 단위 및 단위별 선출 대의원 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기능)** 다음의 사항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소집과 회의)** ①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전국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 제3절 중앙위원회

**제16조(구성)** 중앙위원회는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국교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를 주관한다.

**제17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희생자 구제심사위원장 임명 및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5. 징계의 재심의를 관한 사항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출되는 주요안건 심의
7.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8. 지부/회의 가입 승인
9. 기타 국교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8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한 때
2.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19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위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0조(기능)**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교조의 제반 업무와 활동을 집행한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2.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제출 안건 심의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회 임면
6.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
7. 사무처, 직속기구, 자문기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 예산의 항목 집행액 조정
9.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1조(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집행위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제5절 특별위원회

**제22조(특별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③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절 사무처

### 제23조(사무처)

- ① 국교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통할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④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절 회 의

**제24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의결)** 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국교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3. 임원의 해임

② 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한다.

## 제5장 임 원

**제26조(임원의 종류와 선거)**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0명 이내
4. 감사 2명 이내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상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27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결위 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국교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국교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교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4.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5. 자문기구, 전문기구, 직속기구, 사무처의 구성원을 임면한다.

②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교조의 업무에 대한 감찰
2. 국교조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한 감사

## 제6장 지역기구 및 전문기구

제29조(지회 및 지부의 설치)

- ① 각 국공립대학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 ②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0조(지회와 지부의 운영)

- ① 지회와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회장과 지부장을 둘 수 있다.
- ② 지회와 지부의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지회와 지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1조(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집행위원회 산하로 연구소, 학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와 기타 기구를 독립채산제로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장 재 정

**제32조(재정원칙)** ① 국교조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재정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4조(조합비)** 조합비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5조(지회 등의 운영비)** 지회, 지부 등의 운영비는 조합비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며, 그 비율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제36조(감사)** ① 감사는 국교조의 업무에 대한 감찰과 국교조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8장 단체교섭

**제37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위임받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장 해 산

**제38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39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2019.10.25. 제1호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동조합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신고일 2020.0812]

**제2조 (임원선임의 경과규정)** 2019년 10월 25일 한국교통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2019.10.25.]

**제3조 (조합원가입의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2019.10.25]

부칙 [2020.08.12. 제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08.12.]

부칙 [2021.08.13. 제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다만, 강사는 제외) 및 제4항에 따른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이었던 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한다.[2021.08.13.]

**제7조(조합 가입과 탈퇴)** ② “2. 퇴직한 때”를 삭제한다.[2021.08.13.]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규정

제정(2021. 02. 23. 규정 제0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규약 제13조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이하 “대의원대회”라 한다)의 지위와 구성, 기능, 소집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각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각 지회의 조합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50명 단위로 대의원 1명이 추가로 배정된다.

④ 지회에서 추가로 배정된 대의원은 지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선거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지회에서 정한다.

**제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대의원대회를 대표한다.

**제6조(소집과 회의)** ① 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다음의 경우 위원장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중앙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의할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⑤ 회의는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대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의원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 칙 (2021. 02. 23. 규정 제0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1.07.21. 규정 제002호)

## 제1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라 한다) 규약 제26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국교조 규약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 제4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규약 제13조의 대의원으로 한다.

② 피선거권의 자격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 규약 제11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까지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합 규약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5조 (선거일)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거는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30~60일 전에 개최되는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 대행할 수 있으며, 전임 부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6조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선거종료 5일후까지로 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연장된다.

### 제7조 (직무와 기능)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 2. 선거인 명부 작성
  - 3.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 4. 투·개표의 관리
  - 5. 참관인 등록 관리
  - 6. 당선인 확정 공고 및 통보
  -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 ② 선거관리위원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3장 선거사무

### 제1절 입후보자 등록 및 사퇴

#### 제8조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 ① 선거공고는 선거일로부터 10일전까지 하여야 하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일로부터 5일전까지 실시한다.
- ② 선거공고문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선거 구분
  - 2. 입후보자 등록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 3. 투·개표 일시 및 장소
- ③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입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2. 후보자 약력 및 공약서

**제9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 후 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 노조활동경력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항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①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즉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 ②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 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입후보 사퇴)**

- ① 입후보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 서명 날인한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확정된 입후보자를 즉시 공고한다.

## 제2절 선거 운동

**제12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하고,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각 후보와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숙식,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규약이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14조 (선거선전물 발행)**

- ① 후보자의 모든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공고할 수 있다.
- ③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입회하에 후보자간

의 추천을 통하여 정한다.

### 제15조 (합동연설회)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합의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 ②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이를 행하되 연설회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절 투·개표

#### 제16조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열람)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규약 제13조의 대의원에 한하여 작성한다.
-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선거인명부에 착오 및 누락 등이 발생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제17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작성하여야 하며,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투표용지에 의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관리한다.

#### 제18조 (투표 절차)

- ①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②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 도구로 기표하여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제19조 (개표 관리)

-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 ② 개표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각 후보의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③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등 모든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여 사무처에 이관한다.

#### 제20조 (참관인)

- ① 입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참관인에 한하여 투·개표에 참관할 수 있다.
- ② 각 후보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교체할 수 있다.

#### 제21조 (당선자 결정 및 공고)

- ① 당선은 재적 대의원의 득표로 결정한다. 단, 단일 입후보시에는 찬반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당선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수석부위원장은 당선된 부위원장 중에 호선으로 결정한다.

#### 제4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2조 (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로 된 때.
-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 제23조 (보궐선거)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1. 위원장이 사망,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 2. 위원장이 사퇴하거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 ②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선임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 ③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④ 보궐선거의 절차는 본 규정 선거절차를 준용한다.

#### 제5절 이의신청

제24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조합규약 또는 이 규정의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야 하며,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 **제4장 보 칙**

**제26조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선거관리규정에 불명확한 조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중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개정한다.

## **부 칙**

**제1조 (준용)** 본 조합과 관련된 기타 선거는 본 규정을 준용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회계규정

(제정 2024.02.15. 규정 제003호)

##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이라 한다) 규약 제7장에 의거하여 국교조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교조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법령과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국교조의 자산관리 및 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국교조의 규약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회계구분)

-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회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1. 법령, 규약 및 규정에 의거 특정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2. 정부 및 타 기관에서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3. 기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조성되는 특정자산의 적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회계책임) 자산, 기금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위원장이 책임을 진다.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6조(예산 편성)

-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1의 '예산계정과목표'에 따라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③ 예산의 집행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 예산의 30/10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 사용 목적과 금액을 적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추후 전국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준예산, 경정예산)

- ①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
  2. 법령, 규약, 규정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인건비,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장은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따른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차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예산의 내용)

- ① 예산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로 구분한다.
- ② 예산은 계정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수입과 지출은 별표1의 예산편성계정과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교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계정과목에 특정 항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연도에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당 항목을 예산편성계정과목으로 지속고자 하는 경우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④ 이익발생 단위의 수입과 지출은 별표 1의 예산 편성계정과 목표에 따라 분류된 내용에 준하되, 특정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3항에 준한다.

#### 제10조(지출예산의 이월)

- ① 매 회계연도의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결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용경비 금액 중 해당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 사업완성 연도까지 누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적립금) 제 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일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익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잉여금 및 부족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수입

제14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규약 제34조에 의거하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액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회는 국교조에 납부하는 의무금(조합비) 이상의 조합비 액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 혹은 지회는 규약 제9조에 따른 의무금(조합비)을 국교조에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부과금)

① 국교조는 규약 제33조에 따라 필요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성격, 목적, 금액, 납입기한을 정하여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규약 제9조에 따라 1항의 특별부과금을 국교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교조는 특별부과금의 결산에 대하여 별도로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수입) 조합비, 특별부과금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부 및 후원금
- ② 외부 및 정부 등의 지원금
- ③ 사업 수익금 : 조합이 발간한 자료 및 도서 판매비 등 사업의 잉여금
- ④ 잡수입 : 조합비와 1, 2, 3호 이외의 수입

## 제4장 회계단위

제17조(회계단위) 국교조의 회계단위는 하나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 1. 규약 제31조에 따른 전문기구
- 2. 수익자 부담에 의한 사업단위
- 3.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회계로 운영하도록 정한 기관 또는 사업단위의 회계

제18조(별도 회계의 운영)

- ① 별도 회계의 예산과 결산 등의 제 사항은 본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회계처리

제19조(집행의 원칙)

- ① 국교조는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후 승인을 얻는다.

제20조(결재절차)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위원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전결을 명할 수 있다.

#### 제21조(금전출납취급)

- ① 금전출납은 위원장이 임명한 자가 담당한다.
- ② 사무처는 수입, 지출의 수속을 지체 없이 정확하게 처리하고, 매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수입 지출의 절차)

조합의 금전 출납은 원칙적으로 사무처가 담당한다. 다만 사무총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 해 정해진 한도의 사업과 금액에 대해 사무처 이외의 부서가 금전출납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종료 즉시 당해 금전 출납 상황을 지체 없이 사무처에 보고하고, 잔금을 사무처에 인도하여야 한다.

####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 ① 국교조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운영세칙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 ② 국교조의 지출은 조합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해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국교조의 통장 또는 카드를 통한 결제 외의 지출은 영수증을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수입금의 예치)

- ① 모든 수입금은 국교조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후 출납하며, 예금의 인감은 법인인감으로 사용한다. 단,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보관 지출할 수 있다.
- ② 제22조 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교조는 해당 사업의 금전출납 담당자에게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이체하여 출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잔금을 인도받을 때 잔금을 국교조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 제6장 회계장부 및 전표

### 제25조(회계장부)

- ① 국교조의 통장과 카드를 통한 지출의 회계장부는 국교조 통장의 거래 내역서 및 카드 사용 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출 이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제1항의 내역서에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회계장부는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의1(보조장부) 국교조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장부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출장일지
2. 자산 및 부채 원부

제27조(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습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래자의 확인 서명을 받거나, 지급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제28조(계정과목 분류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관한 계정과목은 감사의 의견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장 자산관리

제29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제30조(고정자산) 고정자산은 임대보증금, 토지, 건물, 차량, 50만원 이상의 비품으로 한다. 단, 50만원 이하의 비품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1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출자금, 임차보증금, 미수입금, 가지급금 등으로 한다.

제32조(자산과 비품관리)

① 모든 회계단위는 고정자산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감가상각을 시행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여 수급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내용 연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재한 후 폐기 또는 매각 처리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 제8장 감사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매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4조(감사실무위원) 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를 위하여 감사실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5조(감사 대상)

① 감사의 대상은 사무처와 별도 회계 단위 및 전문기구로 한다.

② 감사 시 본부는 사무처장과 별도 회계단위의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

요할 경우 감사는 위원장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감사요령)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

- ①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 ② 회계장부 기재액과 회계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 ③ 통장 및 카드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자료와의 차이 여부
- ④ 규정 제30조, 제31조의 자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 ⑤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 여부 및 회계장부와의 일치 여부
- ⑥ 항, 목의 적정성 여부
- ⑦ 사업에 적정한 예산 수립과 집행 여부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감사보고)

- ① 감사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감사결과를 익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위임)

이 규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회계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 제9장 특별회계 회계운영

제39조【특별기금】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규약 제14조에 따라 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2. 특정 수입으로 특정 경비를 충당할 경우

② 제1항의 특별기금의 설치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설치한다.

제40조【특별기금의 전용】 특별기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특별기금의 결산보고】 위원장은 특별기금별로 당해 회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특별기금의 회계결산 및 감사】 특별기금의 결산 및 감사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조합 회계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 조합 회계 수입·지출 총괄

구분	예산액 (A)	수입액 (B)	지출액 (C)	집행잔액 (B-C)
조합회계				

□ 집행잔액 현황

구분	집행잔액	비고(이월/반납)
계		
수입	이월금	
	조합비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기타		
자본	적립금	
부채	차입금	

수 입

구분	주요항목내용
전년도 이월금	직전 회계연도 말 현금 및 예금의 잔액
조합비	규약에 따라 조합원이 단위노동조합 내지 산하조직(지부,지회 등)에 납부하여 발생하는 수입
하부조직 부과금	가맹노조·산하조직으로부터 받은 부과금(가맹비, 의무금)
후원금	조합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수입
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회계 간 전입으로 발생한 수입
보조금수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입
수익사업수입	임대사업, 영리시설 운영사업 등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익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기타	조합비, 상급단체 교부금, 하부조직 부과금, 후원금, 타회계 전입금, 보조금, 수익사업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 지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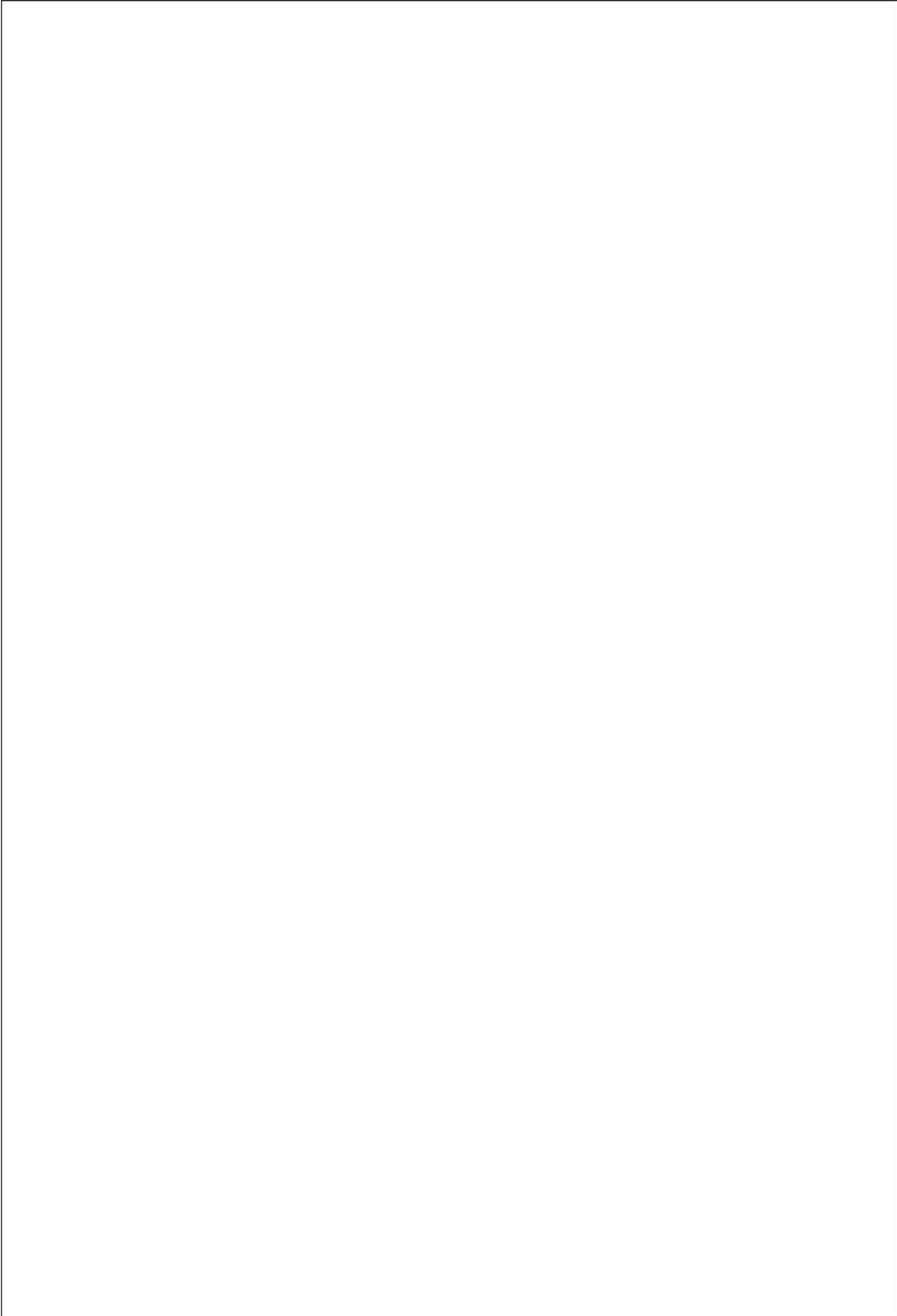
구분		주요항목내용
일반 관리비용	인건비	임직원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업무추진비	직급별 경비, 대외 행사 경비 등 사무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기타운영비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이외 임대료, 공과금, 여비, 교통비,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통신비, 인쇄비 등의 비용
사업 수행비용	대회비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 회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조직사업비	신규 조합원의 가입, 지부·지회 등 산하조직 신설, 확대, 변경 등의 조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정책사업비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의제 개발, 제도개선 연구 등 노동조합의 정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홍보사업비	신규 조합원 및 간부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상·홍보물 게시, 유인물 부착 등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교섭·쟁의사업비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 쟁의, 집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 및 지원금 등
	기타사업비	사업비 중 대회비, 조직사업비, 정책사업비, 교육홍보사업비, 교섭·쟁의사업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하부조직 교부금		산하조직에 배분하는 교부금
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회계 간 전출로 인한 금액
기타		일반관리비용, 사업수행비용, 상급단체 부과금, 하부조직 부과금, 타회계 전출금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차년도 이월금		수입총계에서 당기지출을 차감한 금액

**첨부자료 5.**

**임원 연락처**

직책	임원		
위원장	남중웅	한국교통대학교	010-4533-0189
수석부위원장	최인철	경북대학교	010-3400-5831
부위원장	강종수	강원대학교	010-5550-6126
부위원장	장시광	경상국립대학교	010-9013-8458
부위원장	서정호	공주대학교	010-9420-8805
부위원장	이광희	금오공과대학교	010-8599-1826
부위원장	김석만	부산대학교	010-2599-7738
부위원장	최석용	전남대학교	010-5017-4889
부위원장	김종우	제주대학교	010-8827-7459
부위원장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010-6277-6684
부위원장	이준우	한밭대학교	010-4743-6609
사무총장	김영표	한국교통대학교	010-3375-9476
지회장	유정호	한국교통대학교	010-3643-3466
지회장	배득렬	충북대학교	010-9755-2694
지회장	윤창선	한국체육대학교	010-3676-6899
정책위원장	공 석		
홍보위원장	최인철	경북대학교	010-3400-5831
조직위원장	강종수	강원대학교	010-5550-6126
교권위원장	공 석		
기획위원장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010-6277-6684
발전위원장	임경빈	한밭대학교	010-5209-5085
자문위원장	오홍식	제주대학교	010-6800-8679
감사	배재국	한국해양대학교	010-2926-4781
감사	임경빈	한밭대학교	010-5209-5085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positioned below the '[MEMO]' label and above the page number. The interior of the box is completely blank, suggesting it is a placeholder for content that has not been added to this version of the document.